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2017. 12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공동연구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 요 약

## I. 심층평가의 개요

- 현행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서 고용을 효과성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당 분석은 실효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됨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장 제18조에서는 제도 운용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효과성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변화’의 범주에 고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심층평가의 첫 주기(2015~2017년)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주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도 또는 고용창출이 직접적인 제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일부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함
  -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분석항목으로 포함함
  
- 2015년 처음으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가 실시된 이래 2017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평가는 총 54개임
  - 이 중 35개는 의무평가이며, 19개는 임의심층평가임
  - 35개 의무평가 대상 중 의무심층평가는 총 28개이며, 예비타당성평가는 7개임
  - 지금까지 수행된 35개 의무평가 중 17개의 평가에서 고용분석이 진행됨
  
- 각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의가 요하는 것이기도 함
  - 이론적으로는 조세특례제도 각각이 고용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효과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여타 효과와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예비타당성평가) 기존 제도를 존속시킬지(심층평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 문제에 대한 확신 없이 고용효과를 임의로 측  
정하여 제도 평가에 반영할 경우 심각한 왜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는 심층평가의 결과가 제도운용  
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를 구분해야 함
  - 또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제도의 성격이나 가용 분석자료의 범주에  
따라 그에 적합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해야 함
  - 향후 조세특례 성과평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용영향평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한 지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상술한 고용영향평가 도입배경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에 따라 2017  
년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수행함
  - 2018년부터 본격화하려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고용분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입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조세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도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심층평가임

## II.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의무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대상 전수에 대하여 대상제도가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지, 실제 보고서에  
서는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정  
리함
  - 2015~2017년까지 수행된 35개의 의무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7개, 의무심층  
평가 28개) 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먼저, 평가대상제도가 고용에 있어 얼마나 명확한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검토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상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 제도에 대한 검토 이후, 각 평가보고서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분석방법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요약함

<요약 표 1 > 기수행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의 고용분석 현황

(단위: 회)

연도	평가 종류	총 평가 횟수	고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횟수
2015년	예비타당성평가	3	1
	의무심층평가	14	6(단순비교분석 1건 포함)
2016년	예비타당성평가	2	0
	의무심층평가	6	4(단순설문분석 1건 포함)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평가	2	2
	의무심층평가	8	8(단순설문분석 1건, 노동수요예측 1건 포함)

- 기수행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들은 대체로 기존 평가에서도 여러 방법들을 활용하여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특히, 고용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는 기존 평가에서도 전부 고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함
- 그러나 고용이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고용효과 분석 여부의 결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음
  - 모든 조세특례제도가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게 됨
  - 그렇지만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식별하여 그 크기를 분석하는 것은 분석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으며 분석 가능하다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간접효과는 설령 이론적으로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실증분석의 수행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임

- 우선, 간접효과의 예상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분석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간접효과의 예상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는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제도의 효과를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이 계량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도 상당함
  - 계량분석방법론으로 제도의 순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실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음
  - 위의 이유 등으로 제도의 순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료와 방법론으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그 결과가 실제 효과를 호도하고 왜곡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기수행 성과평가에서 고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경우 미시자료를 근거로 하는 미시계량분석방법,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및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그 외에도 설문분석 등이 활용됨
- 미시계량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 회귀단절법, 성향점수매칭 및 도구변수법 등이 활용됨
  - 미시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모형이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고용효과 내지 취업유발효과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미시계량분석방법보다는 적게 사용됨
  - 실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설문조사의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함
-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서식 항목으로는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청서에는 대상세액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 및 공제/감면율 정도의 정보 수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서식으로는 제도에 의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곤란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일부 서식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같은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고용효과를 논할 수 있음

### Ⅲ.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1.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함
  - 2010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위탁하여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는 대상의 선정, 평가 실시, 결과통보, 정책반영, 모니터링의 순으로 진행됨
  - 평가결과 도출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함
  
- 이상원(2013)의 고용영향평가지침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의 범위(항목)와 그에 대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고용영향평가는 ‘기초 조사와 전체 열개 구성’, ‘양적 효과 평가’, ‘질적 효과 평가’,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로 구성됨
  - 양적 효과 평가 중 직접 효과는 주로 미시계량방법론을 사용하며, 데이터의 유무 및 적정성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하거나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함
  - 양적 효과 평가에서 간접 효과에 대한 기본방법론으로는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제시함
  - 질적 효과 평가에 대하여는 고용 확대, 고용의 질 제고, 인력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의 대분류를 기초로 진행할 것을 제시함
- 2016년에 실제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든 보고서에서 이상원(2013)이 제시한 평가 범위를 모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도의 특성이나 자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 범위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양적 효과 평가에서는 평가 범위와 방법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고용영향평가는 그 평가가 단독으로 연구과제이며 제공되는 자료 등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적용하기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현행 고용영향평가는 그 고용효과 분석만으로 평균 5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와 거의 동등한 규모의 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특히, 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제한된 요소들이 상존함
  - 현행 고용영향평가에서 원론적으로는 양적 효과를 거시적/미시적 내지 직접/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된 보고서를 볼 때 이를 모두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2.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례분석

-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에 대하여 성과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각국에서 고용분석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요약 표 2〉 주요국의 조세특례제도 성과관리체계 요약

국가	조세특례제도 성과평가
캐나다	매년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한 조세지출 평가와 불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조세지출 검토가 재무부 주관하에 진행됨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는 고용과 연관이 있는 제도에 한하여 직접효과와 관련된 분석만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됨
아일랜드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분석수준 및 분석 기한을 달리하며 사전·사후평가로 나누어 조세지출 도입 시 혹은 일정 기간 후 재무부 주관하에 진행됨 고용분석은 고용부문과 연관된 항목에 한하여 노동시장 잠재가격을 이용한 개괄적인 수준에서 진행됨
미국	「정부성과관리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출과 함께 조세지출도 평가하나 타 정책 수단들에 비해 분석 수준이 미흡하며, 회계감사원에서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들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공개 보고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가 포함된 사례는 찾지 못함
일본	총무성의 정책평가 중 일부로 진행되며 매년 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부처별로 사전·사후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법인세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 투명화법에 따라 의회에서 재검토함 평가서 양식을 기초로 할 때, 평가항목 중 고용효과에 대하여 명시된 사례는 찾지 못함
독일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조금 보고서에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일부 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이 진행됨 공개 자료상 고용에 대한 평가항목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제도 도입의 합리성’ 항목에서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음
영국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별로 성과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권고함 심층분석의 내용에서도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찾지 못함
호주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항목당 규모를 추계하는 것 이외의 뚜렷한 성과평가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프랑스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시 관련 조세지출을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이외의 조세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찾을 수 없음 재정지출 성과보고서에서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고용인원 할당과 실제 채용 인원,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다루는 수준임

- 주요국에서는 간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지언정 간접 효과에 대한 불확실한 정량분석은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직접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명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정량분석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사례를 볼 때,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에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사례도 많지 않지만 간접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간접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량적으로 그 효과의 크기를 정교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직접 효과만을 성과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3. 국내외 고용효과연구 사례분석

- 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를 미국과 국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요약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요약 표 3> 노동수요 관련 조세의 효과성 - 선행연구 정리

제도	저자	효과 추정 결과
NJTC	McKevitt(1978)	30만명의 고용증대효과(개인사업 고용의 9% 정도)
	Perloff & Wachter(1979)	70만명의 고용증대효과
	Bishop & Haveman(1979)	1977년대 중반부터 1978년 중반까지 130만명의 총고용증대효과. 건축산업의 경우 고용률이 8.2~9.9% 증가, 유통산업은 3.4~4.0% 증가
	Bishop(1981)	건설 및 유통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77~78년 기간 동안 40만명의 총고용증대효과(총고용증대의 40%)
	Tannenwald(1982)	제도로 인해 세후임금이 10% 감소할 경우 신규고용은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기대고용효과의 2% 수준임
TJTC	Martinez et al. (1991)	수혜기업 중 절반 정도가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도를 통해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소매점의 저임금 일자리였음
	Hollenbeck & Willke(1991)	임금에 미친 추정계수가 흑인/히스패닉 남성 38\$, 백인 남성 -72\$, 백인 여성 -82\$, 흑인/히스패닉 여성 -103으로 백인 남성과 백인/흑인/히스패닉 여성은 TJTC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Bishop & Montgomery(1991)	13~30%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청년층(25세 이하)에 고용증대효과 집중
	O'Neill(1982)	18세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리(job vacancies)의 수가 120만개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비용이 20% 감소함

제도	저자	효과 추정 결과
WOTC	Levine(2005)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5개 주의 16개 기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로부터 WOTC가 채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함
미국의 노동 시장 정책 전반	Bartik(2001)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에 비해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증대에 효과적임
	Kluve(2006)	메타분석, 결과, 제도의 효과성이 서비스·규제, 임금보조,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창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Card et al.(2010)	직업탐색보조, 직업훈련 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관측되었으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음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조정업 외(2011)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도입되므로 고용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송원근 등(2013)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건설업, 금융업 등 225개사의 2011년 채용 인원 합계가 26,275명이었으나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인원은 25,728명으로 2.1% 감소함
	윤성만·박진하(2015)	노동수요 창출효과가 전체 기업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더욱 효과적임
	김동훈(2016)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제조업종보다는 비제조업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제도	심충진·이준규(2011)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계수값(t값)은 1462.40(9.63)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병구 외(2012)	고용촉진세(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유사)의 재정비용 10억원당 직접고용효과는 166.96명, 총고용효과는 479.25명, 재정비용 10억원당 총취업효과는 607.17명으로 나타남
	전승훈(2010)	노동수요 탄력성이 작고,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적용 등의 이유로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함
사회 보험료 감면	장지연 외(2010)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감면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고용규모가 5.6% 증가함
	유한욱(2011)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이 우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월성이 보장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한상운·성주호(2013)	영세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효과가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짐
	유경준 외(2016)	적용 지역의 근로자 고용률을 0.12%p, 총고용률을 0.18%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병희 외(2014)	고용보험가입률을 소폭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유경준 외(2016)	두루누리 시범사업과 두루누리 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각각 2.4%와 2.7%,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각각 3.1%와 2.0% 증가시켰으나, 고용규모에는 두 사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에서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적절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조세특례제도 각각의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는 미시계량방법으로 정량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미시계량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군(정책 수혜 집단)과 대조군(수혜집단과 정책 수혜 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유사한 비수혜 집단)에 대한 실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정책 전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증자료가 모두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 최소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실증자료만 있어도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한 방법론(예를 들어, 도구변수법 등)이 있음
-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구분된 실증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제도의 순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IV.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 1.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고용 혹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직접’, ‘간접’, ‘무관’으로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은 평가 대상 조세지출이 직접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의 창출 혹은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접’은 평가 대상 조세지출이 직접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의 증가 혹은 감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무관’은 평가 대상 조세지출이 고용 및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작을 경우

- 직접 효과의 경우에는 수요측에 영향을 주는 조세지출과 공급측에 영향을 주는 조세지출로 구분
  - 고용평가의 주된 관심은 일자리 창출 여부이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보다는 수요측 요인이 분석의 중심임
  - 공급측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지출은 특별한 경우에만 고용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가용 자료와 분석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자리, 고용, 취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도만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 효과의 경우 대체효과, 산출효과, 산업효과 등을 통해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료의 가용성, 평가의 난이도, 효과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용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 효과의 크기에 따라 고용효과 분석을 평가에 포함하려 한다면 기준이 되는 크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며, 크기도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 다만,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간접 효과로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용자료로 분석이 가능할 경우라면 고용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겠음
  
- 한편, 조세지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조세특례제도는 직접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고용효과의 성격(직접/간접 효과)과 무관하게 제도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임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에서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준이 될 ‘일정 규모’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나 현행 조세특례제도들의 조세지출규모나 규모별 조세특례제도들의 고용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조세지출규모는 1조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고용영향을 평가할 조세특례제도 대상 여부 선정은 고용 창출 목표와의 관련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고용 창출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경우 → 평가 대상
  - 2단계: 고용 유지를 요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있는 경우 → 평가 대상
  - 3단계: 고용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 평가 대상
  - 4단계: 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평가 배제
  - 5단계: 고용과 무관하거나 간접 효과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평가 배제
  - 별도: 목적에 상관없이 조세지출 규모(1조원 이상)가 매우 커서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 평가 대상

## 2. 고용영향평가 분석모형

-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자는 자칫 정책 수혜대상 집단(처치집단,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집단(비교집단, 대조군) 사이의 평균을 단순히 비교하기 쉬움
  - 처치집단의 선정이 무작위(random)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처치집단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음
- 처치집단의 선정이 성과와 무관하다(unconfounded)고 가정하면 평균 처치효과와 평균적인 정책수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이 처치집단이면서 동시에 비교집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잠재적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함
  - 잠재적 결과는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일종의 결측치(missing value)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 자료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 분석모형들은 이러한 잠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임

□ 고용영향 분석절차 개괄

-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음
  - ① 분석자료 탐색
  - ② 분석단위 설정
  - ③ 고용영향 분석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계량지표) 설정
  - ④ 분석을 위한 비교집단 설정
  - ⑤ 추정 모형(방법) 설정
  - ⑥ 변수 구축
  - ⑦ STATA 등 통계프로그램으로 추정모형 추정
  - ⑧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성 평가

□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도의 수혜 집단에 따라 기업, 자영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초적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와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로 인한 고용영향과 관련하여 수집해야 할 정보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음
- 설문지 작성 이전에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와 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문항 구성 시 문항과 문항 사이의 논리적 흐름, 문항 내 질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필요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설문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시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순서로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영향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별로 적합한 분석모형을 요약하면 <요약 표 4>와 같음

<요약 표 4> 기용자료 종류별 분석모형

	정책시행 전후 자료 사용 가능	정책시행 후 자료 사용 가능
미시(패널)자료가 있는 경우	이중차분 모형	도구변수 추정모형, 성향점수매칭, 회귀단절모형, 고정효과모형
미시자료가 없는 경우	투입산출분석/비용편익분석	

### 3. 현행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 적용 대상 분류

- 제1절에서 논의된 고용영향평가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특례제도(개별세법상의 조세지출 항목 포함) 중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항목은 총 20개임
  - 먼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를 도입목적으로 명시한 항목은 총 19개임
  - 이 중, 심층평가의 기본조건인 조세지출규모 300억원 이상(2016년 실적 기준)을 만족하는 제도는 9개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부녀자 추가공제, 기업상속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제도는 총 11개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한편,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투자와 관련 제도는 총 17개이며, 이 중 조세지출규모 300억원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은 총 6개임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4. 통합서식에 대한 검토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서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
  -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은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하기에 그 정보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별지 서식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모든 서식이 디지털 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님<sup>1)</sup>
  - 게다가 다른 고용 관련 서식들도 서식 간 이질성이 커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모든 법인세 신고 법인이 작성하기에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고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공통서식을 생각해 볼 경우, [요약 그림 1]과 같은 예시 서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서식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DB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하면,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항목 평가에 적합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서식의 작성은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를 떠나 모든 법인세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처치집단(실험군)과 비교집단(대조군)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둘째, 해당 서식의 적용기간도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를 떠나 수혜 전부터 수혜 후까지가 모두 포함되도록 장기 자료로 축적되어야 정책 실행 전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여 제도의 순효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함

1) 해당 내용은 2017.12.18.에 실시한 전문가집단 면담에서 나온 의견임(면담 참석 전문가들은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연구진으로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을 가진 5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음)

[요약 그림 1] 고용 관련 공통서식(예)

**고용관련 공통서식**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고용관련 정보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⑦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임금총액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⑧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임금총액
3. 상시근로자 인원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총액

- 만약 위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 제한적인 집단에 대하여 제한적인 기간에만 자료를 수집한다면,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매우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통합서식을 기입하는 데에 투입되는 기업의 시간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집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서식을 운용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통합서식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한 통합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는 모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자료의 수집도 매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양자의 자료와 정책 시행 전후의 자료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또한, 이미 국세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해당 근로자가 속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통합하는 것이므로 가용자료에 대한 가공작업이 됨
  - 따라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합한다면 추가적인 통합서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자별 통합자료는 상당히 많은 정보량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가공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제공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임

## V. 결론 및 정책제언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지침이 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범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를 의미함
- (수행근거)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함
- (평가대상)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의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특례제도의 도입목적에 고용에 관련된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에 관련된 표현에는 ‘고용’, ‘취업’, ‘일자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와 같이 고용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도 포함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특례제도의 직전연도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일 경우
  -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인 제도
- (평가방법) 고용영향평가 대상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함

- (미시계량분석) 기업의 고용정보와 재무·납세정보를 통합한 미시자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해당 자료의 정보량 수준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으로 미시계량분석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함
  - (산업연관분석) 미시계량분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고용/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 (설문조사) 미시계량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의 방법에 따른 효과분석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 두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함
  - (고용영향평가 진행 불가 시) 위의 세 가지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료 접근의 제한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행결과에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연구자는 각 분석방법별 수행 불가의 사유를 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용영향평가 수행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다음의 사항들을 고용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제도의 도입목적으로 ‘투자’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영향평가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영향평가를 권고함
  - 고용영향평가의 의무대상이나 위의 권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구자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
  - 수행근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의 효과성 분석 대상 중 ‘고용’에 대한 분석이므로,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시 고용영향평가는 효과성(예비타당성평가의 경우 경제성) 분석 내에서 기술하도록 함
  - 임의심층평가의 경우에도 평가대상의 특수성이 없는 한, 본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에 준하여 분석을 진행함

# 목 차

<b>I. 심층평가의 개요</b> .....	<b>23</b>
1.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25
2. 국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고용분석 현황 .....	27
3.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의 쟁점사항 및 연구방향 .....	28
가. 관련 쟁점사항 .....	28
나. 연구 목적 .....	31
다. 연구 방향 .....	31
4. 관련 선행연구 .....	32
<b>II.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b> .....	<b>37</b>
1.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분석 .....	39
가. 2015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39
나. 2016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51
다.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56
2. 현행 서식의 고용영향평가 활용가능성 검토 .....	65
3.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합의 .....	92
<b>III.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b> .....	<b>95</b>
1.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97
가. 고용영향평가의 개요 .....	97
나. 평가 대상·절차·기간 .....	98
다. 평가 범위·방법론 .....	100
2.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례분석 .....	101
가. 캐나다 .....	101
나. 아일랜드 .....	107

다. 미국 .....	110
라. 일본 .....	111
마. 독일 .....	116
바. 영국 .....	118
사. 호주 .....	123
아. 프랑스 .....	124
3. 국내외 고용효과연구 사례분석 .....	127
가. 미국 연구사례 .....	128
나. 국내 연구사례 .....	133
4.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합의 .....	141
<b>IV.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b>	<b>143</b>
1.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	145
가. 고용(취업)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구분 .....	145
나. 고용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 .....	149
2. 고용영향평가 분석모형 .....	153
가. 이론적인 고용효과 평가 원칙 .....	153
나. 분석모형 .....	154
3. 현행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 적용 대상 분류 .....	169
4. 통합서식에 대한 검토 .....	173
<b>V. 결론 및 정책제언 .....</b>	<b>177</b>
1. 주요 내용의 요약 .....	179
2.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 안 .....	181
<b>참고문헌 .....</b>	<b>184</b>
<b>[부록] 고용효과 추정 방법론 .....</b>	<b>191</b>

## 표 목 차

<표 I-1>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상의 효과성 분석 .....	27
<표 I-2> 조세특례제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현황 .....	28
<표 I-3> 기수행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의 고용분석 현황 .....	28
<표 III-1> 캐나다 조세지출 보고서 내 심층 분석 .....	103
<표 III-2> 아일랜드 사전·사후평가 검토항목 .....	108
<표 III-3> 조세지출 규모에 따른 사전·사후평가 .....	108
<표 III-4> 일본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의 사전 평가서 양식 .....	112
<표 III-5> 일본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의 사후 평가서 양식 .....	114
<표 III-6> 독일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분석 일부 .....	116
<표 III-7> 노동관련 18개 항목에 대한 개요 .....	119
<표 III-8> 영국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분석 일부 .....	122
<표 III-9> 프랑스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고용인원 할당 및 성과에 대한 내용 .....	125
<표 III-10> 주요국의 조세특례제도 성과관리체계 요약 .....	127
<표 III-11> 노동수요 관련 조세의 효과성 - 선행연구 정리 .....	139
<표 IV-1> 가용자료 종류별 분석모형 .....	167
<표 IV-2> 고용영향평가 관련 조세특례제도 항목 .....	171
<부표 1> 산업연관표와 고용량 행렬의 구조 .....	203

## 그림 목 차

[그림 III-1] 고용영향평가 절차 .....	97
[그림 IV-1]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	146
[그림 IV-2] 자본에 대한 조세지출과 노동의 고용 .....	149
[그림 IV-3] 가용자료 종류별 분석모형 판단과정 .....	167
[그림 IV-4] 고용 관련 공통서식(예) .....	174

# I. 심층평가의 개요





# I. 심층평가의 개요

## 1.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 일자리 증대를 핵심 정책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고용 친화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4대 주요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제시함
    -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세제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정부는 정책별 고용효과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조세특례 성과평가(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제도별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 수요가 높아짐
  
- 지금까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효과 분석 내지 고용영향평가의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평가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음
  - 지금까지 성과평가 내에서 고용영향평가 포함 여부에 대한 연구진의 판단이 문제된 바는 없으나 포함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평가에서는 고용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
  
- 각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모든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의무화 또한 평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모든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특례제도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부수적인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부적절한 조세특례제도까지 모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해당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은 평가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됨
  - 부적절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경우, 자칫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함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절한 수행지침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발생함
- 그러므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는 심층평가의 결과가 제도운영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를 구분해야 함
  - 또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제도의 성격이나 가용 분석자료의 범주에 따라 그에 적합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해야 함
  - 향후 조세특례 성과평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용영향평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한 지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상술한 고용영향평가 도입배경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수행함
  - 2018년부터 본격화하려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고용분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입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조세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층평가임

## 2. 국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고용분석 현황

- 현행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서 고용을 효과성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당 분석은 실효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됨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장 제18조에서는 제도 운용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효과성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변화’의 범주에 고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심층평가의 첫 주기(2015~2017년)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주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도 또는 고용창출이 직접적인 제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일부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함
  -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분석항목으로 포함함

<표 1-1>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상의 효과성 분석

<p><b>※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187호) 제5장 제18조</b></p> <p>제18조(효과성 분석)</p> <p>① 효과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해당 조세특례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그로 인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과급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을 위한 모든 비용과 함께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세입효과도 반영하여야 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7063>)

- 2015년 처음으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가 실시된 이래 2017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평가는 총 54개임
  - 이 중 35개는 의무평가이며, 19개는 임의심층평가임
  - 35개 의무평가 대상 중 의무심층평가는 총 28개이며, 예비타당성평가는 7개임

<표 1 -2> 조세특례제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현황

(단위: 개)

구분	의무평가		임의심층평가	합계
	예비타당성평가	의무심층평가		
2015년	3	14	3	20
2016년	2	6	16	24
2017년 상반기	2	8	9	19

□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개괄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의무평가에서 고용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수행된 35개 의무평가 중 17개의 평가에서 고용분석이 진행됨

<표 1 -3> 기수행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의 고용분석 현황

(단위: 회)

연도	평가 종류	총 평가 횟수	고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횟수
2015년	예비타당성평가	3	1
	의무심층평가	14	6(단순비교분석 1건 포함)
2016년	예비타당성평가	2	0
	의무심층평가	6	4(단순설문분석 1건 포함)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평가	2	2
	의무심층평가	8	8(단순설문분석 1건, 노동수요예측 1건 포함)

□ 기수행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II장 ‘기수행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분석’에서 다루도록 함

### 3.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의 쟁점사항 및 연구방향

#### 가. 관련 쟁점사항

□ 제1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의를 요하는 것이기도 함

- 이론적으로는 조세특례제도 각각이 고용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효과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여타 효과와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예비타당성평가) 기존 제도를 존속시킬지(심층평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 문제에 대한 확신 없이 고용효과를 임의로 측정하여 제도 평가에 반영할 경우 심각한 왜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의 명확성이 제도별로 다름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가능하게 할 자료의 유무에 따라 평가 가능성도 결정됨
- 제도가 가지는 고용효과의 명확성이 다르다는 것은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도 있고 특정 산업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제도도 있음을 의미함
- 간접적인 효과의 경우, 그 효과의 수준은 다양하며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에는 임의성이 많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의 경우 청년고용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접적으로 기업이 고용에 대한 행태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용에 대한 행태를 바꿔야 혜택이 가는 제도는 아니지만 R&D 관련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행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R&D로 인하여 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전환될 경우, 단순 노동직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므로 단순 노무인력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기술직과 연관된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노동직과 연관된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간접 효과들을 모두 수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경우, 국제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실질적인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해당 제도 역시 국제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 해당 금융업과 관련된 고용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즉, 고용과 연관성이 미미한 제도조차도 고용에 대한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 이렇게 제도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의 명확한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제도에 대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어려움뿐 아니라 분석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조세특례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되는 실증자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용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곤란함
- 예를 들어,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기업의 고용에 대한 행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종업원 수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이나 고용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분석은 진행할 수 없음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려 할 경우에도 제도 수혜 예상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한 산업에 적용되는 제도라면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효과분석을 시도할 때에도 평가대상 제도의 수혜집단(실험군)과 대조군 집단에 대한 표본을 적절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효과 추정이 어려움
- 따라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더라도 모든 제도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합당한 도입방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할 제도에 대한 적절한 범주화 작업이 도입방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임

##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나 분석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함
  - 둘째는, 고용영향평가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연구 목적 1)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및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세특례 제도를 고용분석이 필요한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로 재분류하고 각 제도별로 적절한 고용영향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제도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 적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도를 재분류함
  - 향후 고용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도의 성격과 제도에 대한 실증 데이터의 접근 수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목적 2)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의 지침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평가나 심층평가 운용지침 등의 관련 법규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향후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고용영향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 성과평가 내의 고용영향평가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반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반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용지침과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관련 법규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함

## 다.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임의심층평가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심층평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연구의 방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열거된 조세특례제도들 가운데 특정 조건들(지원 규모, 일몰 도래 등)을 만족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개별 제도 단위로 평가함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대상이 되는 개별 조세특례에 대하여 그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됨
  - 그러나 본 연구는 개별 조세특례제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수행 시 적용될 고용영향평가의 도입방안을 사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은 조세특례 제도들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적합성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는 작업과 각 범주에 적용하기 합당한 평가방법론을 매치시키는 작업이 될 것임
- 이 두 가지 분석의 수행결과는 상술한 연구 목적 1의 직접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연구 목적 2를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가 됨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일반적인 심층평가에서 수행하는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대신 기존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과 여타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일반적인 심층평가는 제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로서 개별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심층평가의 평가항목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평가 접근방식도 차이가 나야 함

#### 4. 관련 선행연구

-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본고에서 참고할 만한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함

- 본 절에서는 2009년 도입된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봄
  
- 이인재 외(2008), 『고용영향 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수행한 중·장기 정책연구사업인 고용영향분석·평가사업의 첫 해(2007년) 결과물로서 정책평가에 관한 외국사례,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위한 정책평가 방법론, 고용영향 분석·평가 방법론, CGE 모형의 구축과 정책실험 등을 다루고 있음
  -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업무와 평가가 따로 가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
    - 평가결과가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함
  - 고용영향평가에서 활용할 만한 아래의 방법론들에 대하여 그 기본 내용 및 장·단점 등을 소개함
    - AHP(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Fuzzy 의사결정 기법, DEA(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결합한 AHP-Fuzzy-DEA 방법
    - DID(이중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s)
    - PSM(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 Heckman의 선택모형(Selection Model): Heckman의 2단계 추정법(2-Step Method)를 의미함
    - IV(도구변수법;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 CGE(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주무현(2012), 『고용영향평가 방법과 제도개선방안 모색』
  - 201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의 기초발제 보고서
  - 우리나라의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평가 유형과 평가 절차,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해외 고용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EU, 독일, ILO 등의 고용영향평가 사례들을 설명함
-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평가모형의 개선과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함
  - 평가모형의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의 다양화,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상이한 고용효과의 추정, 거시경제지표 및 사회정책지표의 반영, 미래 고용효과 추정모형의 개발, 해외 고용영향평가 전문기관과의 교류 확대, 실태조사의 통계기법 강화 및 정교화 등을 제시함
  - 평가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법적 규정 및 절차의 개정, 평가 대상 사업의 ‘고용인지적’ 예산 편성 의무화, 평가 대상 과제의 다양화, 시의성 제고 및 수시 과제 확대, 정책개선 협력체계 개선, 활용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함
-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 수행에 있어 공통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
    -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 대상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적인 방법론과 골격으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함
  - 고용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 평가 절차, 평가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함
    - 평가 대상 및 평가 대상 선정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함
    - 고용영향평가의 핵심 내용으로 네 가지 요소(기초 조사와 전체 열개 구성, 양적 평가, 질적 평가,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를 설명함
  - 고용영향평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적 효과 및 질적 효과의 분석방법, I-O (투입산출모형) 방법론 등을 설명함
    - 양적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효과와 간접 고용효과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 고용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 등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음
    - 간접 고용효과의 추정에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I-O모형, CGE 모형, 시계열 모형, 다변수 회귀분석, 방정식 체계 거시 모형 등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설명함

- 나태준 외(2014),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 4년차를 맞아 해당 제도의 쟁점사항들을 논의한 연구
  - 전문가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바탕으로 고용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전문가 심층면접은 고용영향평가 제도설계 및 방법론 개발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 참여한 교수진 3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공무원 1명을 대상으로 함
  - 현행 고용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평가 환경요건과 평가 자원요건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평가 환경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평가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② 고용영향평가가 사후평가 위주로 운영됨 ③ 평가항목 및 방법론의 표준화가 확립되지 못함 ④ 평가결과의 환류가 미흡함 ⑤ 평가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미흡함 등을 지적함
    - 평가 지원요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평가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데이터 구축 및 평가자료의 확보 수준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을 손꼽음
  -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도 환경측면과 자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함
    - 평가 환경측면에 대해서는 ① 명확한 운용지침, ② 사전적 고용영향평가, ③ 평가결과 환류방안의 구체화, ④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함
    - 평가 지원측면에 대해서는 ① 평가기관의 역량 강화, ② 양질의 고용정보 데이터 구축 등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함



## Ⅱ.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





## II.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

### 1.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분석

- 본 절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의무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대상 전수에 대하여 대상제도가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지, 실제 보고서에서는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리함
- 2015~2017년까지 수행된 35개의 의무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7개, 의무심층평가 28개) 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임의심층평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이는 임의심층평가가 평가 당시의 필요나 여건에 따라 운용지침의 표준에서 예외적인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먼저, 평가대상제도가 고용에 있어 얼마나 명확한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상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 제도에 대한 검토 이후, 각 평가보고서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분석방법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 결과는 어떠한지 요약함

#### 가. 2015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예비타당성평가 1: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를 보유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인출시점에서의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국민의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추가적인 정책 기대효과로 금융업권 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업종 내의 고용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은 내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의 변화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의 크기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용효과 분석에 적합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평가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 기업 간 거래 시 현금성결제방식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업 간 대금결제 시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 다만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투자 및 고용 등이 증대할 가능성은 존재함
  - 그러나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식별/측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고용효과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평가 3: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이 보훈관련 취업지원·알선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에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시키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책목적상 고용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
  - 해당 제도는 특정 계층의 고용창출이 정책의 목표이므로,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실제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경제성 분석항목에서 고용영향을 평가함
  - 평가에서는 일반 근로자가 보훈대상자로 대체되는 효과(생산성 하락 가능성)를 중심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함
  - 실증자료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통계를 이용함

- 고용대체의 효과는 통계자료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계량분석 없이 직접 산출하였고, 고용창출투자세액 지원의 귀착효과로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고용대체에 따른 기회 생산성 손실은 연간 892.2억원으로 추산하였고, 고용창출투자세액 지원 귀착효과로서 고용은 0.0405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

□ 의무심층평가 1: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 등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비용 등 차감전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저축에 대한 지원을 1차적인 목표로,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을 2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홍범교 외, 2015)
- 이에 대해, 고용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1차적인 목표는 고용효과와 거의 상관이 없는 정책목표임을 알 수 있음
- 2차적인 목표의 경우, 목표대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고객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기대되지만 이와 동시에 해당 기관의 예수금 규모 확대에 따른 기관의 외연 확대 가능성도 존재함
  - 외연 확대에 의한 고용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고용효과는 여러 단계의 가정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임
  - 즉, 외연 확대가 실현될지에 대한 조건과 외연 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큼
- 따라서 본 제도에 의한 고용효과는 지나치게 부수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에도 실증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용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정책목표이나,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층평가에서도 제도의 효과성 평가 부분에서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함
  - 연구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여 업종별 법인세 실효세율과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제도로 인해 증가한 창업중소기업 수를 계산한 후 창업중소기업당 평균근로자 수를 이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함
  - 자료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함
  - 법인세 실효세율과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고정효과모형(linear 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동 제도를 통해 2012년 기준 13,682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됨

□ 의무심층평가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 제도의 정책목표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증대가 고용에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내재됨

- 다만,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실증적으로 식별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
- 심층평가에서는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제도 수혜기업의 종업원 수 및 연구원 수 증가율을 기타 연구개발활동 수행 기업의 증가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함
  -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함
  - 분석결과,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종업원 수 및 연구원 수 증가율이 기타기업의 증가율보다 낮았음

□ 의무심층평가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R&D 설비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그러나 제도를 통해 설비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설비투자는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역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켜 고용이 확대/축소될 여지가 있음
    - 자본이 늘어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는 연구와 감소한다는 연구가 공존하므로 해당 제도의 고용에 대한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용에 대한 효과가 간접적이며 설비투자가 증가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충분한 분석자료 및 기간이 확보되어 개별 연구자가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심층평가에서는 제도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이고 자료의 한계 등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의무심층평가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5년 말까지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5~40% 감면해 주는 제도
- 조세지출예산서(2015년도)에서는 제도의 도입목적은 ‘공익사업 촉진 및 원활한 수행’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도의 목적은 고용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
  - 다만, 공익사업의 촉진으로 인한 공익사업부문의 고용확대 가능성은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제도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어떤 사업자(공익사업/일반사업)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공익사업이 활발해 진다면 그만큼 일반사업자의 활성화는 기회비용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공익사업부문의 촉진에 따른 일반사업의 기회 상실이라는 구축효과도 고려해야 함
-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고용효과는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며, 간접적인 효과도 그것을 수치로 추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증자료도 충분치 않으며 추정할 적절한 방법도 찾기 어려움
  - 해당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
  - 청년고용 증가의 경우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청년 외 고용증가인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함
-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임
  - 해당 제도는 특정 기업군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효과성 부분에서 고용영향을 평가함

- 평가는 해당 제도 수혜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함
- 분석은 설문조사 자료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함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해당 제도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세제혜택 규모가 작아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대다수임
- 국세청 신고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해당 제도로 인한 유의미한 고용창출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해당 제도의 수혜기업 집단과 비수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가장 유사한 기업들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는 Nearest Neighboring Matching 방법을 이용함
  - 분석결과, 해당 제도로 인해 0.82~2.8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정재호 외, 2015)
  - 도시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증대를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음
  - 도시철도의 건설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계획 아래 실행되는 것이므로 본 제도를 통해 토목 및 건설업이 부양되거나 그로 인해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짐
- 따라서 본 제도 역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모두 분석대상으로 다루기 곤란한 제도임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95% 경감하여 적용하는 제도
    - 95% 경감률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제도의 도입목적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으로 명시되어 있음(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 88)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이면서 이와 함께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간 세제혜택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김유찬 외, 2015)
  - 해당 제도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정책이므로,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해당 직종으로의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택시 운수는 면허에 의해 영위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관리된다는 점에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LPG)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
  - 해당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도입됨(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p. 91)
  - 따라서 본 제도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으로 해당 직종의 취업 선호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그렇다 하더라도 앞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택시사업이 사업구역별 총량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본 제도에 의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움

- 결국, 해당 제도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도로 판단되며,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1인당 총 21,120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
- 본 제도는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주골프관광산업의 발전과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동규·전호철, 2015)
- 따라서 본 제도는 고용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상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평가의 이슈가 될 수 있음
  - 고용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을 직접적으로 목표한(targeting)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동반하여 평가하기에는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효과성 분석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일부로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함
  - 해당 제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세수유발효과를 살펴봄
    - 취업은 자영업 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임금을 받는 고용보다 광의의 개념임
  - 취업유발효과의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05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함
  - 분석방법론으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산업연관분석(regional input-output analysis)을 사용함
  - 7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각각 그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176명에서 최대 7,742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가장 현실적으로 무난한 시나리오인 시나리오7의 결과를 보면, 세금감면제도로 약 1,02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시나리오7)는 지금까지의 해당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3,370억원) 규모와 비교할 때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함

□ 의무심층평가 1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를 면제하는 제도
- 제도의 도입목적은 적정운임 유지로 도서민을 포함한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운항원가 상승 억제로 연안여객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로 명시되어 있음(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 88)
  - 따라서 본 제도는 고용확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님
  - 연안여객 운송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고용효과가 간접적으로 기대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기대는 적절하지 않음
    -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는 현재의 운행항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낙도의 무인도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측면이 강함
    - 즉,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영업할 수 없는 수준에서 영업을 유지되는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개념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고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만, 지원이 없었다면 연안여객 운송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제도의 간접 효과로 고용유지효과는 인정될 수 있음
- 종합하건대, 해당 제도는 고용의 직접 효과를 평가하기 적절한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간접적인 효과도 고용유지 정도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임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함(201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 본 제도는 세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고용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인 고용증대 목적은 찾을 수 없으며, 간접적인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음
  - 굳이 간접적인 효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처리하던 당시의 인력이 감축될 요인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를 통한 전산화 과정에서 전산 인력의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고용변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예상되는바, 간접적인 효과분석 또한 적절한 평가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13: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 및 신규 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 신규 상장 중견기업은 4% 공제율을 적용함
-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 및 신규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
  - 간접적인 정책 기대효과로 기업 설비투자 증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있음
    - 다만, 자본과 노동이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설비투자 증대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존재하고, 분석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심층평가에서는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가 수혜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제도 수혜 여부 및 수혜금액의 크기가 종업원 수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용영향을 평가함

-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자료와 KIS-Value 자료를 사용함
- 개인과 법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함
- 분석결과, 고용촉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와 장기 분석을 모두 수행한 법인 표본의 경우 단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외부감사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장기효과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남
  - 개인 표본의 경우 단기효과만을 분석하였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의무심층평가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게 최초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임(오종현 외, 2015)
  - 본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들에게 유인(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해당 제도는 고용효과가 직접적인 기대효과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해당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내의 효과성 분석에서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해당 제도는 동일한 취업준비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 그러므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개인의 선택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의 취직 대신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는 대체효과가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임
  -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중소기업은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2015년 심층평가에서는 고용효과의 분석을 위해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서 취업준비자들의 세제혜택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를 직접 묻기도 하였고, 설문응답을 이용하여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을 구축하고 프로빗(probit)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하기도 함
- 설문조사의 직접 응답 변화를 통해 해당 제도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변화분을 추정한 결과, 제도는 1%p 내외 수준으로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는 1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현실 연봉을 상승시킬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결과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높은 확률로 취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범위를 1순위로 좁힐 경우 세제혜택 규모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찾을 수 없었음

#### 나. 2016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예비타당성평가 1: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우대하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 증가분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
    -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해 자체 연구개발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제도의 정책목표는 민간의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직·간접적 혁신효과의 창출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제도를 통해 수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대할 가능성은 존재함
    - 그러나 제도가 직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판단됨

- 해당 제도로 인해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수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평가 2: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기술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감면해주는 제도로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기술이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대기업에도 적용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거래시장을 양성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제도가 시행되어 기술 확산이 촉진되고 전체적인 생산성이 제고되는 경우 고용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그 효과가 간접적이고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기술거래 활성화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고 생산성 제고가 다시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제도는 고용영향평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을 한도로 동 초과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 본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도입목적은 고려할 때, 고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임

- 본 제도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9/109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율인 10/110보다 낮은 수준
- 본 제도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시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전병목·류덕현, 2016)
-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고용증대를 1차적인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본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산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본 제도의 심층평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폐자원 수집활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는 세부담에서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제도임
    - 따라서 본 제도는 재활용산업의 부양 내지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이러한 수준의 제도에 의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를 수치화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용효과 분석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지 않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효과성 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면서 취업유발효과도 함께 분석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실행함
-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당 9.58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본 제도가 없을 경우 동일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취업유발계수인 14.9312명보다 낮은 수준임
  - 동일 재원이 정부소비지출에 사용될 경우 15.3472명, 정부투자지출에 사용될 경우 13.4559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 둘의 가중평균값으로 14.9312명을 도출함
- 제도의 성격으로 볼 때 고용효과까지 살펴볼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하다 보니 산업연관분석 과정에서 계산되는 다양한 유발효과(생산, 취업, 부가가치 등)를 모두 다룬 것으로 보임

□ 의무심층평가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필요한 외국선진 기술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치 촉진을 도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 33)
- 제도의 도입목적상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치 촉진이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를 직접적인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임
  - 17% 실효세율이 세부담 절감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체로 연봉이 1억 5천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본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선진기술 및 지식을 갖춘 고소득 전문경영인, 기술자, 연구자 등의 국내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본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함
  - 제도의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 2016년 심층평가에서는 특정 기업에서의 세후 소득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
    - 사업확장 등 다른 경영활동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세계혜택에 따른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증가효과를 구분하고자 함

- 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자료로 국세청에서 제공한 2008~2014년까지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활용함
- 분석방법으로는 pooled OLS regression,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함께 사용함
- 분석 결과,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수와 세후소득 간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
  - 0에 가까운 미미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해당 제도의 고용효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음을 의미함

□ 의무심층평가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가 필수적인 제도로 보기 어려움
  - 에너지절약시설은 일반적인 설비 또는 시설과 달리 생산요소로서의 성격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간접적인 효과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 고용영향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 특정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고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통한 공익의 확대이므로 고용과 연관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민간지출의 확대가 생산, 고용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내재됨
- 그러나 그 효과가 간접적이고, 비영리법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에 대한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고용영향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효과성 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볼 때 취업유발 효과도 함께 분석함
  - 제도의 고유목적사업지출 확대 및 재무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함
  - 분석결과 제도로 인한 순취업유발효과는 2.44명으로 나타남

□ 의무심층평가 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고용에의 간접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심층평가에서는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 분석에서 고용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고용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
  - 설문조사결과, 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기업의 6.9%만이 세액공제로 인한 절감비용을 추가적인 고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다.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 예비타당성평가 1: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국내외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적인 제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매출증대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이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산업재산권 증가가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
  - 고용에 대한 효과분석은 단순 선형회귀모형과 2단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함
    - 분석 모형에서는 해당 제도가 산업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산업재산권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분석 자료는 설문조사 통계를 사용함
  - 분석결과, 산업재산권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비타당성평가 2: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부 간 고속철도시설 귀속단계에서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
  - 현재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면세 대신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본 제도를 제안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관리 효율화에 두고 있다고 밝힘(김강수 외, 2017)
  - 또한,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감축에 따른 재정건전화 및 고속철도요금 상승 억제에 따른 국민 교통편의 증진
    - 고속철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으로 인해 공단 부채 감소
    -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원조달 가능
    - 교통서비스 비용의 합리적 개선

- 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효과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시행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감축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주로 고속철도요금의 상승 억제라는 점에서 고용 효과는 간접적으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가 부적절함
- 발주처에서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에 대하여 고용영향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실제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고용효과분석을 포함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으로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함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23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함
  - 그러나 저자들은 IO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언급하며 추산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것을 지적함
  - 또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제도로 인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증가 혹은 새로운 사업 시행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의무심층평가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 감면율은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제도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로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고용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고용영향평가는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심층평가에서는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 분석에서 고용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고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 설문조사결과, 해당 제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11%를 신규고용에, 36.8%를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경우 신규고용(25.4%), 인건비 지급(34.9%) 등 고용관련 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분석과는 별도로, 해당 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활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결과도 제시함

#### □ 의무심층평가 2: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김동준 외, 2017)
  - 영농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영세한 농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도시지역 등에 비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영농비용 절감
  - 인력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용비용 절감으로 인력 대체를 유인
  - 생산여건의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축산·임·어업 부문의 소득 증대
- 제도의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고용증대를 본 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임
  - 정책목표의 내용상 고용확대를 직접적으로 기대한 정책으로 볼 수 없음
  -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제도가 농·축산·임·어업의 부양 내지 적극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열악한 여건의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게 비용 절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치화하기에도 불확실한 요소가 많음
  - 따라서 본 제도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실제 수행한 심층평가의 경우 별도로 고용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효과성 분석과정에서 노동수요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저자들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사용하여 농식품군의 수요체계를 추정함
-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03~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지출액자료를 활용하고, 권오상 외(2015)의 2013년 생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의 수량 및 가격지수를 이용함
- 생산요소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요소의 수량변화를 추정하였고, 생산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에 대해서도 수량 변화를 1.00%로 추정함
- 해당 결과를 고용창출효과로 1:1 변환하는 것은 가정이 필요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자들도 분석결과를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이 시장에서 수요가 1.00% 증가하는 것으로만 기술하고 더 이상의 함의를 부각시키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면서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하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고용유지 및 증대에 있으므로 정책목적상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고용영향평가가 필수적임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제도의 효과분석 부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함
  - 실증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 및 고용정보원의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함
  - 고용영향에 대한 평가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수혜기업과 가장 유사한 비수혜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몇 명의 인원을 더 고용하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제도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평균 4~7명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2~4명)보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8~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의무심층평가 4: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제도의 최종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는 고용증대의 의미도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변화분 중 제도의 효과로 분리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영향평가 수행 여부는 연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심층평가에서는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 분석 자료는 설문조사 통계와 국세청의 제도 수혜기업 자료, KIS-Value, KIS-Data를 사용함
    -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분석, 합동 최소자승회귀법(pooled OLS),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였음
    - 설문조사결과, 세액감면으로 인한 절감비용을 추가고용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나타났으며, 수혜기업의 46.7%가 10명 이상 고용인원을 늘린 것으로 응답함
    - 실증분석결과, 해당 제도의 고용촉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보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고용촉진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의무심층평가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적인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설투자의 증가로 인해 고용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내재됨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변화시켜 기업의 노동수요 결정에 영향을 줌
  - 노동과 자본이 대체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노동구축효과 또는 고용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고용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가 노동구축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함
  -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 및 기업 기본 정보를 이용함
  - 노동구축효과는 이중 혹은 삼중차분법을 적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해당 제도의 확대에 의해 고용이 감소하는 노동구축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고용증대효과도 나타나지 않음

□ 의무심층평가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세무조정 과정 단순화 및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해 조합법인의 납세행정부담과 세부담을 낮추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조합법인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조합원 및 거래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다만, 조합법인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조세지원 수혜 → 경영여건 개선 →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고용창출효과가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임
- 심층평가에서는 효과성 분석 부분에서 고용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봄
  - 자료는 국세청 미시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함

- 분석결과, 해당 제도의 취업유발효과는 정부지출(소비+투자)의 취업유발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촉진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의무심층평가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제도의 정책목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시켜 ‘수도권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서 고용증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의 고용효과가 간접적이고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영향평가 의무화에 적합한 제도로 보기 어려움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함
  - 분석 자료는 설문조사 통계와 국세청의 제도 수혜기업 자료, KIS-Value, KIS-Data를 사용함
  -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패널분석 및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함
  - 설문조사 결과, 세액감면으로 인한 절감비용을 추가고용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나타났으며, 수혜기업의 35.7%가 10명 이상 고용인원을 늘린 것으로 응답함
  - 실증분석결과, 해당 제도가 고용증대를 촉진했다는 증거는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의무심층평가 8: 청년고용 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오종현·최충, 2017)

- 본 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바 심층평가 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제도임
- 실제 심층평가에서도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실증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2014~2016년 기업 고용정보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KIS-Value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보완을 위해 5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
    - 세제지원의 특성상 법인세를 납부해야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후자기업 및 2년 연속 후자기업에 한하여 분석함
  -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는 회귀단절모형(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이용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는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함
    - 회귀단절모형은 처치(제도 도입)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절점 전후에서 수혜 여부의 차이가 있는 관측치를 대상으로 제도 효과를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 당해연도 후자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주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본에서 본 제도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다만, 민감도 분석 결과, 표본 선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기도 하여 그 효과가 한계적(marginal)인 것으로 해석됨
    - 해당 제도가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더 큰 고용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실증분석하기 어려웠으며, 제도의 특성 및 유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설문분석 결과, 해당 제도로 인하여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같은 경영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심층평가에서는 제도의 목적상 고용효과 분석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함

## 2. 현행 서식의 고용영향평가 활용가능성 검토

- 본 절에서는 세금신고 과정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들을 검토하고, 현행 서식을 이용하여 조세특례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검토함
- 세액공제신청서는 다수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식으로서, 고용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 해당 서식에서는 신청인 명, 주소 등 기본정보와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만을 간략하게 기입하도록 함
  - 해당 서식에 포함된 제도 중 일부는 고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추가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서식에 포함된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복직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있음
    - 이들 중 **【근로자복직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모두 별도의 서식이 존재함
  - 또한, 직접 고용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도 존재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제도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효과가 간접적이어서 효과의 규모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들 제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함
- 세액공제제도 중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제도들만 다시 살펴보면, 일부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석에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는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특성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수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
  - 다만, 고용과 관련된 기타 세제혜택 수혜 여부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제도 비수혜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음
    -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소득 증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근로자 고용형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2) 등 고용과 관련된 기타 세제혜택의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인원에 대한 고용(입사)일자, 병역이행 일자, 복직일자, 인건비 지급액 등을 요구함
    - 이를 통해 해당 인원에 대한 임금수준, 경력단절 기간 등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제도 수혜조건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인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본 서식에 기입된 정보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종전 기업 입사/퇴사일자 및 재입사 일자, 인건비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
    - 이를 통해 해당 인원의 임금수준, 경력단절 기간 등에 대해 알 수 있음
  - 그러나 제도 수혜기업의 전체 고용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기업의 고용에서의 비중 등을 파악할 수 없으며, 제도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에의 활용도는 제한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과 과세연도별 입사자를 제외한 평균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입사자의 평균임금 등도 계산이 가능함
  - 이를 통해 제도 수혜기업의 임금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타 고용관련 세제혜택 여부, 비교군(control group)인 제도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보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전체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중 정규직/비정규직 수 등과 같은 고용의 질적 정보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파악이 가능함

- 그러나 해당 서식은 임금에 대한 정보 및 제도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개인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일시,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의 임금 정보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개인별 정규직 전환 시기와 임금 변화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보 등이 전무하고, 제도의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는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와 각 근로자집단별 총 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제도 수혜기업의 고용증대 정도를 직접 관측할 수 있음
  - 다만, 고용과 관련된 기타 세제혜택 수혜여부, 해당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의 고용인 수 정보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는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총인원 및 인건비에 대한 정보, 연구개발 인력의 세부정보(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등을 요구함
  - 그러나 고용변화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할 의무가 없고,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외에도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고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별도의 서식에서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정보를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다른 서식과 비교할 때 고용 관련 정보가 가장 상세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서식이며, 제대로 작성된다면 고용의 질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 다만, 수혜기업만 작성하기 때문에 제도로 인한 순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비교 대상인 유사한 조건의 비수혜기업에 대한 고용행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순수 효과를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액감면(면제)신청서는 다수의 세액감면(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식이며, 해당 서식 역시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기입하는 란은 없음
- 해당 서식은 신청인 기본정보와 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충족 감면세액 등의 정보만을 요구함
  - 해당 서식에는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간접적으로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만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함
    - 해당 서식에 포함된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는 【고용창출형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가 있으며, 해당 제도는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음

-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밖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이 있음
- 이 중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제도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밖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등 총 3개 제도에 불과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식에는 고용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서식에는 법인 전체 및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기 전후의 근무인원 변화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정규직 여부, 근무 시간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항목은 전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서식은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식에서는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이전 이후의 고용인원

변화, 고용형태 등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서식은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식에서는 이전 전의 공장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항목이 존재하나 고  
용인 수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 후의 공장에 대해서도 착  
공일 및 사업개시일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기입하도록 함
  - 해당 서식에서는 고용인 수에 대한 정보 등 고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양적/질적  
정보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b>1</b>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_____ )</div>	

<b>2</b>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신청 내용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⑥ 구 분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3항	14Z			
⑩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⑩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2			
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⑩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⑩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⑩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⑩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⑩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⑩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⑩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⑩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제9항	18B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제6항	18C			
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2항	14S			
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6항	14Y			
⑩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⑩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③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⑫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⑬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⑭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⑮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⑯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⑱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⑲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⑳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㉑ 금사업자와 스크램업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㉒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㉓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b>1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		

<b>2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b>3 공제세액 계 (=4+5)</b>	
------------------------	--

<b>4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8 + 9)</b>	
---	--

1. 기본공제금액 (=8)				⑧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공제세액(=6×7)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3%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1%	
중견기업	수도권 밖		2%	
	계			

2. 추가공제금액(⑫와 ⑳ 중 작은 수)				⑨
------------------------	--	--	--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공제세액(=⑩×⑪)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여		5%		
		부		4%		
	수도권 밖	여			6%	
		부			5%	
계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여		4%		
		부		3%		
	수도권 밖	여			5%	
		부			4%	
계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 상시근로자수 (=⑬÷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고 용 증 가 인 원 에 따 른 공 제 한 도	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⑰ 1명당 공제금액	⑱ 공제한도 (=⑰×⑲)
	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 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㉑≤⑲-⑳)			2천만원	㉔
	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 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㉒≤⑲-⑳-㉑)			1천 5백만원	㉕
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⑲-⑳-㉑-㉒)			1천만원	㉖	

㉗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㉓)	
㉘ 추가공제한도 계(=㉔+㉕+㉖-㉗)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㉘-㉘와 0 중 큰 수)	㉙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5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고 용 증 가 인 원 에 따 른 공 제 한 도	30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31 1명당 공제금액	32 공제한도 (=30×31)
	3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4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5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35≤33-34)		2천만원	38
	36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36≤33-34-35)		1천 5백만원	39
37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33-34-35-36)		1천만원	40	
41 이월공제 한도 계 (= 38+39+40)				
42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43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41)과 42 중 작은 수)				

6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44 과세연도	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45 미공제분	46 납부분	47 계	48 기공제액	49 당기공제액	50 계	51 기한 내	52 기한 경과	53 계
합 계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54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5 상시근로자 수가 54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6 상시근로자 수가 54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7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54-55) + (55-56)]	
58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57×1천만원)	
59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60 납부 세액(58과 59 중 작은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b>①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	
<b>② 과세연도</b>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③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⑥	성명(생년.월.일)	⑦	졸업학교명	⑧	졸업일자	⑨	중소기업 고용(입사)일자	⑩	졸업후 2년이내 고용 여·부
A	( . . . )								여, 부
B	( . . . )								여, 부
C	( . . . )								여, 부
D	( . . . )								여, 부
E	( . . . )								여, 부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⑪	입대일자	⑫	전역 등 일자	⑬	복직일자	⑭	병역이행 후 1년이내 복직여부	⑮	인건비 지급액	⑯	공제율	⑰	세액공제 금액 (⑰×⑯)
A							여, 부				10%		
B							여, 부						
C							여, 부						
D							여, 부						
E							여, 부						
합 계		-		-		-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b>1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b>2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⑥ 성명(생년.월.일)	⑦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⑧ 임신·출산·육아 사유 여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⑩ 종전 입사일자	⑪ 종전 퇴직일자	⑫ 재입사 일자	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⑭ 인건비 지급액	⑮ 공제율	⑯ 세액공제금액 (15×16)
A			여, 부		10%	
B			여, 부			
C			여, 부			
D			여, 부			
E			여, 부			
합 계	-	-	-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⑧ 임신·출산·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b>1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 )</span>	

<b>2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㉗ > ㉘ 또는 ㉙ > ㉚ 이고, ㉛ ≥ ㉜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㉖/㉗)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㉝/㉞)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㉖-㉟)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㉑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㉒/㉓)	⑯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⑰ 상시근로자 수
㉒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㉓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㉔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㉕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㉖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 이상인 경우)**

㉗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㉒-㉓)/㉓	
㉘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㉔-㉕)/㉕	
㉙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㉖-㉗)/㉗	
㉚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㉘-㉙)/㉙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㉝이 양수이면서**

**㉞의 30% 이상인 경우) ㉛=(㉘+㉙+㉚)/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㉜=(㉕-㉖×(1+㉛))×㉜]**

**7. ㉝이 음수이거나, ㉝이 양수이지만 ㉞의 30% 미만인 경우 ㉛,㉜,㉝,㉞의 계산 특례**

㉛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㉕+㉖)/2	
㉜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㉖+㉗)/2-㉘)/㉘)	
㉝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㉘+㉙)/2	
㉞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㉛-㉜×(1+㉝))×㉜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㉗ > 3.3%이며, ㉛ ≥ ㉜ 이고, ㉝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㉗ 중소기업 계산특례(=㉕-㉖×(1+3.3%))×㉜	
------------------------------	--

**1 세액공제액(㉟ = (㉝ 또는 ㉞)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10%)), ㉟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㉟ ×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b>①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_____ )	

<b>②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 4. 공제세액 계산

⑮ 공제대상 인원 [Min(⑧,⑪,⑭)]	⑯ 1인당 공제금액	⑰ 공제세액 (⑮×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b>①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b>②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b>③ 세액공제 요건 확인</b>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⑥ ≥ ⑦이어야 함)		

**④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 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정규직 전환 연월일)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 원, 1억 2천만원 이상 고 액연봉자, 최대주주·최 대출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나. 세액공제액**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⑭ 임금 증가분 합계액 (⑬-⑫)	⑮ 공제율	⑯ 세액공제금액 (⑭×⑮)
A				
B				
C				
D				
E				
합계 ⑭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⑭란 및 ⑯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b>1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b>2 과세연도</b>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3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공제세액 합계(⑦+⑭)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⑭)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24]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⑩)	⑬ 사회보험료율 (=20)	⑭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
---	------------------------------	-------------------	---------------------------

**다. 사회보험료율**

⑮ 국민건강보험	⑯ 장기요양보험	⑰ 국민연금	⑱ 고용보험	⑲ 산업재해 보상보험	⑳ 계 (⑮+⑯+⑰+⑱+⑲)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⑳ 공제세액(㉒×㉓×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㉒×㉓×0.7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㉒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㉓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㉔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㉒-㉓)	㉕ 증가한 청년등 상 시근로자 수 (=⑩)	㉖ 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㉒-㉓)
----------------------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㉗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㉒-⑩)	㉙ 사회보험료율 (=20)	㉚ 사회보험료 부담금 (㉗/㉘×㉙)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b>1</b>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b>2</b>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b>3</b>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재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계정 과목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b>14</b>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b>15</b> 직전 4년 발생액 계 (16+17+18+19)	<b>16</b> (직전 1년)	<b>17</b> (직전 2년)	<b>18</b> (직전 3년)	<b>19</b> (직전 4년)
<b>20</b>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15/4)		<b>21</b>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18)/3		<b>22</b>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2	
<b>23</b> 증가발생액 (2013년 14-21, 2014년 19-22, 2015년 이후 14-16)					

<b>4</b>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b>24</b> 대상금액(=13)	<b>25</b> 공 제 율 25%			<b>26</b> 공제세액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b>27</b> 대상금액(=13)	<b>28</b> 유예기간 종료연도	<b>29</b>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b>30</b> 공 제 율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b>31</b> 공제세액
	중견 기업	<b>32</b> 대상금액(=13)	<b>33</b> 공제율 8%			<b>34</b> 공제세액
	일반 기업	<b>35</b> 대상금액(=13)	<b>36</b> 기본율 1%	<b>37</b> 추가	<b>38</b> 계	<b>39</b> 공제세액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16<20 경우 공제 제외)		<b>40</b> 대상금액(=23)	<b>41</b> 공제율 %		<b>42</b>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30%
<b>43</b>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26과 42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31과 42 중 선택) 중견기업(34와 42 중 선택) 일반기업(39와 42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 는 금액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⑯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⑤, ⑥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b>1</b>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

<b>2</b> 과세연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	---

<b>3</b>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재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⑥	⑦	⑧	⑨

<b>4</b> 공제세액						
해당 연도 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⑩ 대상금액(=⑨)	⑪ 공 제 율			⑫ 공제세액
		⑬ 대상금액(=⑨)	30% 공 제 율			⑰ 공제세액
			⑭ 기본율 20%	⑮ 추가	⑯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li> <li>-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li> <li>-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li> <li>-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li> <li>-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li> <li>-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 방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⑮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 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 가.2))	임차료 등 (별표 6 1. 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 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b>①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_____ )	
<b>② 과세연도</b>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		
<b>③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b>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⑨-⑫)×⑪×50% + (⑮-⑱×105%)×⑭×50% ]		
<b>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b>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 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b>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b>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 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b>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b>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 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 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b>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b>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 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 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b>1</b>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b>2</b>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㉓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11				
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74				
㉕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3E				
㉖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㉗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㉘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㉙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㉚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㉛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㉝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㉞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㉟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㊱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㊲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㊳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㊵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7항	107				
㊶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3항	11B				
㊷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3항	119				
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㊹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㊺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5항	11A				
㊻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㊼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5항	11F				
㊾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5항	11H				
㊿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3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㉔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㉕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㉖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 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㉗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㉙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㉚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 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㉛ 기타		164				
㉜ 세액감면 합계		1A4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㉞, ㉟ ~ ㊱에 대해 적용)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⑭ ⑪ × 20%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⑯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⑯ - ⑩)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_____)</span>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감면세액계산내용

일반사항	⑥ 이전 전 본사 소재지	⑦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⑧ 본사 이전 등기일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small>*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small>			
	법인 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⑩ 연평균 인원( )명	⑪ 연간급여총액(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⑫ 연평균 인원( )명	⑬ 연간급여총액( )	
	⑭ 감면대상 소득	⑨ × {(⑫ ÷ ⑩)과 (⑬ ÷ ⑪) 중 작은 비율}		
⑮ 감면세액	산출세액 (법 제62조 제4항 적용전)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감면비율(100%,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⑩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⑩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⑬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⑮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별지 제46호의 2 서식] (2016.3.14. 개정)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폐쇄·철폐·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세액	$\left( \frac{\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right) \times \left(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100\%, 50\%)}$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⑰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⑱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⑲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 본사 이전등기일	
			㉑ 이전 전 본사의 업종·업태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		
계산 내용		㉓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㉔ 연평균 인원 ( )명 ㉕ 연간급여총액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㉖ 연평균 인원 ( )명 ㉗ 연간급여총액 ( )			
		위탁가공무역의 매출비율		㉘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㉙ 총 매출액 ( )			
		㉚ 감면대상 소득		㉚ × { (㉖ ÷ ㉔)과 (㉗ ÷ ㉕) 중 작은 비율 } × (㉘ ÷ ㉙)			
㉛ 감면세액		$\left( \frac{\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right) \times \left(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100\%, 50\%)}$					
㉜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left( \frac{\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right) \times \left(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100\%, 50\%)}$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별지 제46호 서식] (2015.3.13.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태·종목			
구공장	⑦ 소재지 (전화번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업태·종목	⑫ 조업개시일	
	⑬ 구공장 이전일		⑭ 구공장 폐쇄(양도)일	
공장이전	⑮ 신공장 착공일		⑯ 신공장 사업개시일	

감면세액계산내용

⑰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산내용	⑱ 감면대상소득금액					
	⑲ 감면비율					
	⑳ 감면대상세액					
	㉑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㉒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㉑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적습니다.
- ㉒ 감면세액"란에는 "㉑ 감면대상세액"에서 "㉑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3.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함의

- 기수행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들은 대체로 기존 평가에서도 여러 방법들을 활용하여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특히, 고용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는 기존 평가에서도 전부 고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함
  
- 그러나 고용이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고용효과 분석 여부의 결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음
  - 모든 조세특례제도가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게 됨
  - 그렇지만 간접 효과를 실증적으로 식별하여 그 크기를 분석하는 것은 분석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으며 분석 가능하다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간접 효과는 설령 이론적으로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실증분석의 수행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임
    - 우선, 간접 효과의 예상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분석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간접 효과의 예상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는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제도의 효과를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이 계량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도 상당함
    - 계량분석방법론으로 제도의 순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실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음
    - 위의 이유 등으로 제도의 순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료와 방법론으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그 결과가 실제 효과를 호도하고 왜곡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기수행 성과평가에서 고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경우 미시자료를 근거로 하는 미시계량분석방법,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및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그 외에도 설문분석 등이 활용됨
  - 미시계량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 회귀단절법, 성향점수매칭 및 도구변수법 등이 활용됨
  - 미시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모형이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고용효과 내지 취업유발효과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미시계량분석방법보다는 적게 사용됨
  - 실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설문조사의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함
    - 설문조사 문항 중 직접적으로 제도의 고용효과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종업원 수 등 고용 관련 정보를 답하게 하고 해당 응답을 이용하여 미시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서식 항목으로는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청서에는 대상세액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 및 공제/감면을 정도의 정보 수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서식으로는 제도에 의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곤란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일부 서식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같은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고용효과를 논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의 고용에 대한 단순 변화분은 확인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제도로 인해 유발된 순수효과인지까지는 분석하기 어려움
    - 실험군(수혜기업)과 대조군(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는 자료가 순효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함
  
- 게다가 별지의 모든 정보들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별지 서식을 실증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요소가 많은 여건임



### Ⅲ.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Ⅲ.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1.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 본 절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내용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본 절에서는 주로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절차, 평가기간, 평가범위, 평가방법론 등을 살펴보고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적용하기 적합한 점이나 제한되는 점 등을 비교하고자 함
  - 본 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고용영향평가 위탁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sup>2)</sup>

##### 가. 고용영향평가의 개요

-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용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됨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함

2)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개 및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함

- 2010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함(이상원, 2013)
-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고용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함

## 나. 평가 대상·절차·기간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을 말함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다음의 정책, 사업, 법, 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소개함<sup>3)</sup>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3)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접속일: 2017.12.28.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웹사이트에는 ‘고용영향평가과제제안’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고용영향평가는 대상의 선정, 평가 실시, 결과통보, 정책반영, 모니터링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소개함<sup>4)</sup>
  - 평가결과 도출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함

[그림 III-1] 고용영향평가 절차

대상선정	평가실시	부처협의	결과통보	정책반영	모니터링
대상과제 선정 (국민제안, 전문가 및 부처 협의)	⇒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관련 부처 의견 수렴	⇒ 최종결과 관계부처 통보, 차관회의, 고용정책 심의회 보고	⇒ 각 부처는 정책제언 반영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정책반영현황 모니터링 (부처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자료: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접속일: 2017.12.28.

- 이상원(2013)은 고용영향평가의 절차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1단계: 평가 대상의 선정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평가대상을 선정함
    - 이에 따라 12월 말 선정된 평가대상은 평가기간이 짧고, 6월 말에 선정된 평가대상은 비교적 평가기간이 긴 대상으로 선정됨
  - 2단계: 평가의 준비
    - 평가대상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평가담당자의 구성과 함께, 평가대상 사업의 주무부처와의 연락망을 구성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사업의 주무부처에 요구함
  - 3단계: 평가의 수행과 평가 결과의 권고
    - 평균 5개월의 평가기간을 상정하고, 평가의 결과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 및 정책의 주무부처에 권고사항의 형태로 송달됨

4)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접속일: 2017.12.28.

- 4단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평가대상 사업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사항을 전달받고 1개월 이내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함

#### 다. 평가 범위·방법론

- 이상원(2013)이 제안한 고용영향평가지침에서는 고용영향평가의 범위로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평가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함
  - 기초 조사와 전체 열개 구성
    - 평가대상의 고유 목적 및 재정 투자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업의 고용연계 가능성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분석함
  - 양적 효과 평가
    - 평가대상 사업의 고용효과를 양적으로 측정 혹은 추정함
    - 양적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하거나, 고용효과와 취업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질적 효과 평가
    - 평가대상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질적 효과를 측정함
  -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
    - 위의 결과를 결합하고 사업의 주무부처에 보다 고용친화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함
  
- 이상원(2013)의 고용영향평가지침에 따르면 각 평가범위(항목)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양적 효과 평가 중 직접 효과는 주로 미시계량방법론을 사용하며, 데이터의 유무 및 적정성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하거나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함
    - 대조군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전(pre-policy) 자료의 유무에 따라 이중차분법이나 성향점수매칭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대조군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 사전-사후 간 평균적 차이로 분석함
  - 양적 효과 평가에서 간접 효과에 대한 기본방법론으로는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제시함

- 질적 효과 평가에 대하여는 네 가지의 대분류를 기초로 진행할 것을 제시함
  - 고용 확대, 고용의 질 제고, 인력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의 네 가지 항목을 대분류 기준으로 제시함
  - 질적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로는 사업계획서, 실태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D; Focus Group Discussion) 등을 제시함
  
- 2016년에 실제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든 보고서에서 이상원(2013)이 제시한 평가범위를 모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도의 특성이나 자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범위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양적 효과 평가에서는 평가범위와 방법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이상원 외(2016)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양적 평가에서 거시적 효과, 미시적 효과를 모두 다루고 있고 질적 평가도 함께 수행함
  - 이경희 외(2016)는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직접 효과를 미시분석(Panel-VAR 모형) 위주로 평가하였으며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적 평가는 실태조사와 FGD로 수행함
  - 오선정 외(2016)는 화장품산업 규제 변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직접 효과를 회귀단절모형, 이중차분법, 패널모형 등의 미시계량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적 평가는 국내외 화장품 기업에 대한 면담으로 수행함

## 2.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례분석

### 가. 캐나다

- 캐나다는 매년 재무부 주관으로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진행함
  - 성과평가는 성과관리 위한 조세지출 평가와 불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조세지출 검토로 구분됨

- 현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조세지출 평가는 신규 조세지출 도입에서와 같이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됨<sup>5)</sup>
  - 관련성, 정책 개입의 필요성 및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의 일관성
  - 정책 목표 달성의 효과성
  - 경제적 효율, 시행 및 납세준응비용 등에서의 효율성
  - 재정적 영향
  - 분배 효과
  -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 고려사항(국가 경쟁력, 조세조약 등)
  - 사회적·환경적 고려사항
  
- 조세지출 검토의 경우, 아래와 같은 논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됨
  - 관련성: 대상 과세특례제도는 현 연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역할, 책임 및 규칙에 부합하며 시행 가능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효과성: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함
  - 형평성: 국민들이 받는 과세특례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
  - 효율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최소화 또는 주어진 비용에서의 수혜 범위 최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 대체 가능성: 재정 지출 등 대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해당 항목이 대체 가능한 제도보다 위의 네 가지 관점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
  
- 조세지출 평가와 검토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평가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
  - 캐나다 조세지출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며 각 항목에 대한 관련법령, 정책 목적, 시행년도 및 연혁, 추계금액, 정책대상 및 수혜자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의 마지막에 특정 주제나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공개하며 각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음

5) 해당 인터뷰는 2016년 12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기획재정부에서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음

〈표 III-1〉 캐나다 조세지출 보고서 내 심층 분석

No.	평가 연도	분석 주제	중심 내용	고용 분석 포함 여부
1	2000	Defining Tax Expenditure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	미포함
2	2000	The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미포함
3	2000	GST/HST Treatment of Export Distribution	수출품의 유통과정에 따른 상품용역세와 통합판매세 부과에 대한 논의	미포함
4	2001	Present-Value Tax Expenditure Estimates of Tax Assistance for Retirement Savings	퇴직연금 및 저축지원 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	미포함
5	2002	The Impact of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on the Incomes of Families with Children	자녀세액공제가 자녀가 있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에 끼치는 영향	미포함 <sup>1)</sup>
6	2002	Special Federal Tax Assistance for Charitable Donations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유가증권 공개거래를 통한 자선기부행위의 특별 연방 세금 보조에 대한 논의	미포함
7	2003	Long-Run Projections of The Tax Expenditure on Retirement Savings	퇴직저축지원 조세특례에 대한 장기 전망 분석	미포함
8	2003	Elimination of the Federal Capital Tax: Building on The Canadian Tax Advantage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논의	미포함
9	2004	The Disability Tax Credit: Evaluation Report	장애인 관련 세제 혜택들의 세제공평성 제고, 정책 대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평가	미포함
10	2004	Tax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Results from General Equilibrium Model	조세 감면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감면 정책의 효과 논의	미포함 <sup>2)</sup>
11	2005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on Business Investment: Methodology and Estimates for Canadian and US Jurisdictions	캐나다, 미국의 지역·산업별 법인세 한계실효세율과 법인의 투자결정 패턴 분석	미포함
12	2006	Taxes on Business Invest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계실효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 및 캐나다 조세제도의 경쟁력 분석	미포함

No.	평가 연도	분석 주제	중심 내용	고용 분석 포함 여부
13	2006	Investing in Post-Secondary Education: The Impact of the Income Tax System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에 대한 세제혜택과 향후 세수 변동에 대한 분석	미포함 <sup>3)</sup>
14	2007	Corporate Income Taxes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the 2001-2004 Rate Reductions	2001~2004년 캐나다 산업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와 투자 간 상관관계 분석	미포함
15	2008	Considerations in Setting Canada's Corporate Income Tax Rate	효율적인 캐나다 법인세 구축을 위한 법인세와 투자 간 상관관계, 국제 경쟁력 등에 대한 논의	미포함
16	2009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ax Assistance for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서의 조세지원에 대한 국제비교	미포함
17	2010	Taxes and the Preferred Source of Corporate Finance	과거의 캐나다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에 따른 법인의 금융투자 패턴 분석과 2010년 자료를 이용한 금융투자 패턴의 국제 비교	미포함
18	2010	The Response of Individual to Changes in Marginal Income Tax Rates	소득세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 변화 분석	미포함 <sup>4)</sup>
19	2011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Federal Personal Income Tax System and Refundable Credits: Analysis by Income, Sex, Age and Family Status	소득수준, 성별, 연령, 가족구성 형태별 연방개인소득세제 및 환급형 공제제도의 영향 분석	미포함
20	2011	Evaluation of the Public Transit Tax Credit	대중교통비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미포함
21	2012	Tax-Free Savings Accounts: A Profile of Account Holders	세금면제 저축계좌 가입자들을 분석한 운용 현황 및 정책 효과성 논의	미포함
22	2012	Tax Expenditures for Accelerated Deductions of Capital Costs	감가상각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추정방법 논의	미포함
23	2013	Flow-Through Shares: A Statistical Perspective	2007~2012년 주식시장자료를 이용하여 Flow-Through Shares가 많이 사용되는 산업, 지역별 비교, 수혜 범위 및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	미포함
24	2013	Taxation of Small Business in Canada	캐나다 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개괄적 정의 및 분석	미포함

No.	평가 연도	분석 주제	중심 내용	고용 분석 포함 여부
25	2014	Evaluation of the Federal 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	기부세액공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미포함
26	2014	Interprovincial Tax Planning by Corporate Groups in Canada: A Review of the Evidence	캐나다 주정부 간 법인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분석	미포함
27	2016	The Working Income Tax Benefit: A Profile of Claimants, 2009-2012	2009~2012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수혜자 분석	미포함 <sup>5)</sup>
28	2016	An Evaluation of the Response of Individual to Changes in the Price of Charitable Donations	캐나다 기부세액공제 자료를 이용한 기부의 가격탄력성 분석	미포함
29	2017	A Statistical Profile of Federal Tax Expenditures, 1991~2015	1991~2015년 캐나다 조세지출의 변화 분석	미포함
30	2017	Evaluation of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CFTC) and the Children's Arts Tax Credit(CATC)	CFTC, CATC의 정책 연관성, 제도 효과성, 공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	미포함
31	2017	Evalua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상품용역세 공제제도의 제도 연관성, 효과성, 공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	미포함

주: \* Flow-Through Shares는 광업, 석유 및 가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특정 기업들의 탐사 및 개발활동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으로 자원 탐사비용 세액감면 및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포함함

- 1) Canada Child Tax Benefit의 두 가지 요소 중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 supplement)의 도입 목적에 고용 유지가 포함되나 분석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수입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 증가 및 유지에 관한 부분은 분석 결과로 도출되지 않음
- 2) 투자나 저축에 대한 조세감면과 임금과 소비에 대한 조세감면을 비교하여 조세감면 정책이 노동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일부 언급하나 비교를 위한 설명 도구로써 사용되었음
- 3) 고용 증가에 대한 영향보다는 학사 학위 이상을 수료함으로써 증가되는 개인의 수입에 따른 세수 변동을 분석하여 세제의 타당성을 논의함
- 4) 노동공급, 취업률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아닌 과세표준소득의 세율에 대한 탄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5) 해당 조세특례가 젊은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한다고 결론내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음(조세특례 신고자 수의 추이로도 취업자 수의 증가 등을 파악할 수 없음). 고용인 상태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개년도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한 기업에서의 고용 지속이 아닌 한 개인이 근로 급여를 받는 상태의 지속).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00~2017

- 공개된 보고서를 따르면,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용과 연관이 있는 제도에 한하여 관련 분석이 일부 진행됨
  - 대부분이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관련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도는 고용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음
  
- 캐나다 재무부에 추가적으로 문의한 결과 조세지출평가에서 있어 고용부문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 절차는 없으나 고용 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출을 평가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평가를 진행함<sup>6)</sup>
  -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한 제도들에는 “Working Income Tax Benefit”,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the employment stock option deduction” 등이 포함됨
  
- 노동부문과 관련된 조세지출평가도 다른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용창출효과 및 비용 분석을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함
  - 충분한 가용자료가 있는 등 계량기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경우 계량분석을 진행하기도 함
  - 다른 정책수단과의 유사·상호보완 관계도 분석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정부 개입이 필요한 현 시장실패 상황 설명 등)
  
- 제도의 직접 효과만 분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고용부문과 관련 없는 조세지출이 노동시장에 끼칠 수 있는 간접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용 증대효과와 같이 제도 도입의 간접적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하지 않음

---

6) 추가 문의는 2017년 10월, 캐나다 재무부 담당자(David Messier, Senior Tax Policy Officer, Intergovernmental Tax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Finance Canada)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진행되었음

## 나.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Report on Tax Expenditures」(2014)에서 조세지출 평가 시 경제활동 손실분(Deadweight),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Displacement),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을 가능한 한 고려할 것을 제안함
  -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순경제활동 증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경제활동(경제활동 손실분)을 고려하여야 함
    - 설문조사, 계량분석, 통제집단을 이용한 분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분석의 이점과 자료 가용 여부에 따라 분석 방법을 결정함
  - 제도 시행에 따라 수혜자가 얻게 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비수혜자가 받게 될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모든 자원의 사용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분석 시 자원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조세지출의 경우 노동과 공적자금(의 한계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지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과 관련된 긍정적 영향(임금고용, 세수입 등)을 평가할 때에는 노동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노동의 잠재가격을 이용하여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 잠재가격의 범위를 시장가격의 80~100%로 측정하고 있음
  - 잠재가격 범위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이 가격을 이용한 조세지출 분석방법 등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음
  
- 위의 사항들에 대해 고려한 내용이 조세지출 도입에 대한 사전평가(Ex Ante Evaluations)와 기존의 조세지출에 대한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s)에 포함됨
  - 각 평가에서의 주요 검토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III-2> 아일랜드 사전·사후평가 검토항목

번호	사전평가 검토항목	번호	사후평가 검토항목
1	해당 항목의 정책목표	1	조세지출 효과 지속 여부
2	현재의 시장실패 상황	2	실적치 분석
3	타 정책수단 및 미도입과 비교시 조세지출 도입의 정당성	3	도입 후 영향 평가
4	도입 영향 예측	4	효율성 평가
5	규모 추정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2014

□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사후 검토 주기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정부 정책 변화, 수혜대상의 증가, 사전검토 비용과 사후 실제 투입 비용 간 극심한 격차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5년 이내라도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3수준(Tier 3)에 속하는 항목의 경우 3년 후 중간평가가 필수적으로 진행됨

<표 III-3> 조세지출 규모에 따른 사전·사후평가

연도별 추정 금액	수준	사전평가	사후평가	시간제한/검토
100만유로 ~1,000만유로	1 수준	개괄적 평가	사전 검토에 따른 분석	5년 주기 검토
1,000만유로 ~5,000만유로	2 수준	세부 검토(시나리오 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분석), 제도 설계에 대한 제언, 사후평가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필수 자료 분석	비용편익 분석	5년 주기 검토, 연도별 추정 금액이 5,000만유로 이상인 경우 시행 3년 후 중간 평가 <sup>1)</sup>
5,000만유로 이상	3 수준	세부 검토, 비용편익 사전 분석, 제도 설계에 대한 제언, 사후평가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필수 자료 분석, 가능한 경우 시범 시행	비용편익 분석	시행 3년 후 중간평가

주: 1) 보고서의 표에는 2,500만유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표에 대한 설명에서 “시행 전에는 2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 항목이 실제 시행 후 3수준에 해당되는 경우(즉, 연도별 추정 금액이 5,000만유로 이상인 경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5,000만유로로 고쳐 기재함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2014

- 규모에 따라 분석 수준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사후평가 검토항목은 모두 고려하여 분석함
  - 1수준 사전평가에서는 검토 항목에 따라 개괄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제도의 영향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향후 사후평가에서 분석해야 할 논점들을 제시하고, 사후평가는 사전검토에서 제시된 논점들에 따라 진행됨
  - 2수준 사전평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순편익 및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또는 이에 준하는 분석)을 진행하며 사후평가에서 사용될 평가방법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 필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2수준 사후평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은 경제활동 손실분,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기회비용(노동 및 공적자금에 대한)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함
  - 3수준 사전평가에서는 2수준의 사전평가와 같이 사후평가에서 사용될 평가방법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사전·사후평가 모두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실시되어야 함
  - 3수준 사전평가에서는 가능하다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제도를 시행하며, 사후평가 중 하나로 3년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나 이 중간평가에서는 가용 자료의 유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아일랜드 재무부에 문의한 결과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고용관련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음<sup>7)</sup>
  - 고용부문과 연관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며 분석을 위해 과도한 가정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제이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분석하지 않음
  - 고용부문과 연관이 있는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도 구체적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잠재가격을 이용한 개괄적 분석만 진행함

7) 해당 문의는 아일랜드 재무부 담당자(Jean Acheson, Economic Division,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진행되었음

## 다. 미국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관리 체계나 이와 관련된 법령은 없으며 연방정책평가의 일부로 분석하거나 비정기적 평가만 존재함
  - 재무부와 합동조세위원회에서 조세지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나 조세지출규모추정 이외의 특정 항목에 대한 심층적 평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0년 제정된 예산관리국은 「GPR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연방정부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연방정부 우선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 우선목표에 따라 조세지출을 포함한 정책수단 수립 방향을 결정함
  
- 예산관리국과 관련 부처들은 정책수단들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타의 정책수단들에 비해 조세지출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 관련 부처의 경우, 기존의 조세지출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 제출 의무가 없으며 해당 조세지출의 필요성, 재정정책과의 보완성 등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 예산관리국의 경우, 의회에 예산 개편안 제출 시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음
  -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조세지출이 발생시킬 수 있는 세수감소 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및 개정 조세지출 건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관련 부처들은 신규 및 개정 조세지출의 목적과 관련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함
  
- 또한, 일몰이 없는 항목의 경우, 의회 예산 개편 과정에서의 연간재심사나 재검토가 요구되지 않음
  
- 미국 회계감사원은 아래와 같은 논의점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며 항목 존속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함

- 세수에 미치는 효과
    - 미국의 경우 PAYGO(Pay-as-you-go)원칙을 따르므로 조세지출의 도입이나 연장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연방세율을 증가나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만큼 해당 조세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함
  - 정책목적<sup>8)</sup>
    - 형평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납세자 및 수혜자의 분포,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분석함
    - 경제적 효율성: 조세지출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필요한 곳에) 자원이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정성적 자료의 정량화 문제 등 효율성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음
    - 단순성, 투명성, 운용가능성: 세 정책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으므로 납세순응비용 최소화, 제도 이해성 제고, 제도 운용 비용 절감 등의 관점에서 세 가지 정책목적은 함께 분석함
  - 다른 정책 수단과의 연관성
    - 조세지출이 재정지출, 보조금 등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하여 분석함
  - 규모 추정 가능성
    - 제도 분석에 필요한 가용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지에 대해 분석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해야 함
-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평가 과정에서의 고용영향평가를 찾지 못했으나 공개 보고서만으로는 평가 세부 프로세스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라. 일본

- 일본의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sup>9)</sup>을 바탕으로 한 「조세특별조치 평가 내용 및 절차에 대한

8) 정책목적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은 각각의 특성상 지향하는 목표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각 사항들 간 상충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표준 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조세특례제도의 성과평가를 진행함<sup>10)</sup>

- 제도 도입 및 확충 시 실시되는 사전평가와 제도 도입 후 일몰 연장 및 개정 시 실시되는 사후평가로 나뉘어 진행됨
- 법인세, 법인사업세 및 법인주민세의 경우 사전·사후평가를 통한 검증과정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치기를 권고하고 있음<sup>11)</sup>
- 사전평가의 경우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혜대상, 추정규모, 세수 감소 규모 및 효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 타 정책수단과의 대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사후평가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 정책 목적 달성의 정도, 세수 감소 규모 및 효과, 타 정책수단과의 대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sup>12)</sup>

□ 사전·사후 평가는 아래의 표와 같은 일정한 양식을 두고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국회로 보고되어 예산안에 반영됨

- 평가 결과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각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이며 실제 사전·사후평가서 내용에서도 세제효과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찾을 수 없음<sup>13)</sup>

<표 III-4> 일본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의 사전 평가서 양식

1	정책평가 대상으로서 조세특별조치의 명칭	
2	대상세목	【신설·확충·연장】
3	조세특별조치의 내용	《내용》
		《관련조항》
4	담당부서명	

9)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일본 전자법령시스템)

10)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topic.html#kisei001](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topic.html#kisei001)(일본 총무성)

11) 법인세는 국세,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분류되며 “이외의 세목”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를 포함함.

12)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 소관 정책에 대해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계획 기간, 정책 평가의 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가 활용 방침, 정책 반영에 관한 방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설정해야 함

13) 일본 총무성, 2016

5	평가 실시 시기 및 분석 대상 기간	평가실시시기:	분석대상기간:
6	조세특별조치의 설립 연도 및 개정 연혁		
7	적용 또는 연장 기간		
8	필요성 등	① 정책목적 및 근거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
			《정책목적의 근거》
		② 정책체계에서 정책목적의 위상	
			③ 달성목표 및 실현시 정책목적에 대한 기여도
9	유효성 등	1 적용대상자 수	
		2 세수감소액	
		3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	《효과》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10	상당성	1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	
		2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	
		3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11	관련 전문가의 의견		
12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실시 시기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표 III-5> 일본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의 사후 평가서 양식

1	정책평가 대상으로서 조세특별조치의 명칭		
2	대상세목		【신설·확충·연장】
3	조세특별조치의 내용		《내용》
			《관련조항》
4	담당부서명		
5	평가 실시 시기 및 분석 대상 기간		평가실시시기                      분석대상기간:
6	조세특별조치의 설립 연도 및 개정 연혁		
7	적용기간		
8	필요성 등	① 정책목적 및 근거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 《정책목적의 근거》
		② 정책체계에서 정책목적의 위상	
		③ 달성목표 및 실현시 정책목적에 대한 기여도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정책목적에 대한 조세특별조치의 달성목표 실현시 기여도》
9	유효성 등	1 적용대상자 수	
		2 세수감소액	
		3 효과 및 세수감소 효과	《효과》 《세수감소 효과의 유무》

10	상당성	1	조세특별조치를 이용하는 타당성	
		2	다른 지원조치 및 의무와의 역할분담	
		3	지방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11	관련 전문가의 의견			
12	평가결과의 반영방향			
13	과거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실시 시기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 위의 평가와 더불어 「조세특별조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법인세 관련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함
  -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제도 방향성을 확립하고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검토를 실시함
  - 관련 조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특례세제 적용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적용금액은 각 법인이 법인세 관계 특례조치에 의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총 소득금액을 의미함
  - 재무성은 매년 이를 집계하여 각 조세특례당 수혜자 규모, 수혜 총액, 기타 적용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회에서는 재무성이 조사·집계한 보고서를 토대로 각 조세특례조치에 대해 재검토하나 재검토의 방법이나 검토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찾지 못함

마. 독일

- 독일의 경우, 「안정성장법」 제12조에 따라 격년으로 보조금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보고서의 일부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며 조세지출이 아닌 조세감면 또는 세제 인센티브라고 표현함
- 2017년 보고서 기준 100개의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개괄적 설명, 정책 목표, 일몰기한, 추계규모,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함
  - 심층적인 평가가 진행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 분담기관 유무나 진행 상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함
  -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32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표 III -6> 독일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분석 일부

개요	총수입이 €30,700/€61,400(독신인 경우/부부 혹은 파트너가 있는 경우)를 넘지 않는 농민 및 산림업자의 경우 €670/€1,340까지 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2015년 1월 1일부터는 €900/€1,800까지)			
정책목표	중소기업 진흥, 행정 단순화를 통한 농업 및 임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연혁	(소득세법 제13장 농업 및 임업 소득)§ 13 Abs. 3 EStG			
일몰기한	일몰기한 없음			
추계규모 (추정규모, m€)	2015	2016	2017	2018
	50	60	60	60
분담분	연합: 42.5 %, 국가: 42.5 %, 지자체: 15 %			
지원유형	조정 지원			
수혜내용	농업과 임업 소득에 대한 과세감면을 시행함으로써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농업 및 임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도모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및 산림업자들의 세무행정비용 부담 감소를 도모함.			
제도 지속 가능성(특 례조항 각 호별 내용)	이 법안은 관리 규칙에 관한 것임. (제6호)경제적 변화를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제9호) 농업은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이어야 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친환경적이어야 함. (제10호)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함. (후략)			

비용 체감(遞減)	해당 조치의 비용이 체감(遞減)되지 않음. 해당 조치의 행정적 운영비용이 비용편익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평가 진행 상황	프라운호퍼연구소, 독일 유럽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쾰른대학에서 2017년도 분석을 진행할 예정
전망	개정 계획 없음

자료: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17)

□ 연방정부는 2007년 코펜하겐 컨설팅 회사, 독일 유럽경제연구소, 쾰른대학에 조세 지출평가를 의뢰하여 20대 조세특례조치에 한한 심층분석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논점에 따라 분석함

○ 제도 개요 및 연혁

- 제도의 법적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설계
- 도입 목적에 대한 근거 및 관련 법령
- 도입 년도 및 주요 연혁
- 유사 정책 제도

○ 조세지출제도의 실측 규모

- 세수손실법을 이용한 규모 추정
- 공적기금의 한계비용을 이용한 분석
- 운영비용에 대한 분석

○ 이전 평가 결과

-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
- 유사 세제 및 정책 제도와와의 비교

○ 핵심 평가

- 투명성
- 제도 도입의 합리성
  - 법적 도입목적 달성 여부
  - 재정지출과, 보조금, 타 정책수단과의 상호 보완성
  - 제도의 공익성(경제적 효율성 및 수평·수직적 공평성 고려)
- 재정지출과의 연관성 및 통제성

- 타 정책수단과 비교시 정책적으로 우위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여러 정책수단의 복합적 시행 포함)
- 정책 목적에 가장 적합한 세목 분석
- 가장 적합한 수혜 방법(면제, 감면, 공제, 과세이연 등) 분석
- 정책 목적 달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분석
- 효과성
  -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제도인지에 대한 분석
  -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가능성 분석
- 효율성
  - 제도 수혜단위당 정책목적 달성비용 및 해당 비용의 효율성 분석
  - 수혜단위당 정책목적 비용의 개선 가능성 분석
- 결론 및 정책제언

□ 공개 자료를 통해서도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찾지 못하였으나, 노동과 관련된 제도의 경우 “핵심 평가”의 하위항목인 “제도 도입의 합리성”에서 고용부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바. 영국

- 영국은 조세지출이 아닌 조세감면제도 전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조세감면 항목들 중 세제 구조적 특성을 갖는 항목,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는 항목,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항목을 구분함
  - 따라서 조세감면 항목은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상 감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조세지출 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으며, 대신 매년 조세감면 항목의 일부에 대한 감면 규모 추계 및 추정액을 발표함
- 김영록(2015)에 따르면 영국은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별로 성과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한국과 같은 성과관리 보고서는 아니지만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조세감면 항목들 중 일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감면 항목 개요 및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함
  - 2009년 영국 정부는 국세청 세제간소화 부서(Office of Tax Simplification)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함
  
- 세제간소화 부서에서는 총 1,042개 감면 항목 중 국제조약, 세제 구조적 성격의 조세감면 항목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155개 항목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으며, 아래의 6가지 논점에 따라 이를 진행함
  - 조세감면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잠재적 정책수단들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 정책목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여부
  - 현재 정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해당 감면이나 면제 항목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 납세자들의 제도 인지 정도 및 수혜 규모
  - 감면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 납세순응비용, 세제 복잡성 심화
  - 납세자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
  
- 소기업, 고용, 양도소득세, 상속세, 인지세 등 특성·세목별로 구분한 19가지 범위에서 155개 항목에 대한 세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고용부문과 관련된 항목은 총 18개 항목임

〈표 III-7〉 노동관련 18개 항목에 대한 개요

	세목	항목명	개요	분류
1	소득세&국민보험기금	Employer supported childcare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이용권이나 직접적 보육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주 55파운드까지 공제	특정 집단 대상
2	소득세&국민보험기금	cycles and cyclists' safety equipment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자전거 중 특정 노선에서 사용되는 자전거 용품에 대하여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감면	특정 집단 대상
3	소득세&국민보험기금	cycle to work days-provision of meals	고용주가 자전거 출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아침식사에 대한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면제	특정 활동 유도

	세목	항목명	개요	분류
4	소득세	Repair and maintenance of work equipment	특정 업종의 업무용 장비 수리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특정 집단 대상
5	소득세& 국민보험 기금	Exemption from benefit charge for late night taxis	야간근무자(조건에 부합하는)가 직장부터 자택까지 이용하는 교통비에 대하여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면제	특정 집단 대상
6	소득세	Trade union subscriptions and police organisations	노조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연금, 생명보험, 또는 장례식 비용(연 최대 100파운드/연간 최대 20파운드)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정 집단 대상
7	소득세& 국민보험 기금	Luncheon vouchers-daily relief for first 15p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점심이용권의 경우, 근로일당 15펜스까지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감면	면제
8	소득세& 국민보험 기금	Miners' coal and allowances in lieu of coal	탄광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일정 수준의 석탄 및 무연탄에 대한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면제	특정 집단 대상
9	국민보험 기금	Divers and diving supervisors-NIC Class 4 Exemption	잠수부와 잠수감독관의 경우, 국민보험 기금 4분위에서 면제 <sup>1)</sup>	특정 집단 대상
10	국민보험 기금	Payments as reward for assistance with lost or stolen credit cards	은행 및 소매상 등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카드 확인절차 등에 협조하여 받는 보상금의 경우 국민보험기금에서 면제	특정 집단 대상
11	소득세	Employment related securities for disabled employees	근로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소득세 면제	특정 집단 대상
12	소득세	Welfare counselling	스트레스, 근무상황, 약물 문제 등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상담의 경우 소득세 면제	특정 집단 대상
13	소득세& 국민보험 기금	Loans to employees where interest qualifies for tax relief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연금 가입, 주식 매입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받는 이자의 경우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감면	구조적 조치
14	소득세& 국민보험 기금	Security expenses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장비나 서비스의 경우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금 면제	특정 집단 대상

	세목	항목명	개요	분류
15	국민보험 기금	NICs-disregard for certain apprentices and students coming to the UK	국내에서 방학 동안 고용되어 있으나 국외에서 풀타임 학생인 경우, 국민보험기금 1분위에서 면제	구조적 조치
16	국민보험 기금	Exemption from Class 1A NICs on certain payments by way of securities	국외거주 근로자(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고용 또는 해고 시 발생하는 여행비용에 대하여 고용주의 국민보험기금 1A분위 면제 <sup>2)</sup>	구조적 조치
17	국민보험 기금	Disregard for benefits subject to unauthorised payment charge	고용인이 받는 연금 중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국민보험기금 대상 계산에 불포함	구조적 조치
18	국민보험 기금	Contracted-out rebate occupational schemes	회사 연금에 가입한 고용주/고용인에 대해 국민보험기금 저율 부과	구조적 조치

주: 1) 국민보험기금은 크게 1~4분위로 분류되며 1분위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다른 사람일 경우, 4분위는 자영업의 경우에 해당됨. 영국 의회에 의해 고용되어 해저탐사활동을 하는 잠수부의 경우 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4분위로 분류되며 이외의 경우 1분위와 같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4분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지 않음.

2) 국민보험기금 1A는 고용주가 직원 및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특정 현물급부나 회사 차량에 대하여 부과됨.

자료: Office of Tax Simplification(2014)

- 위의 표에서 “분류”는 세제간소화 부서에서의 분류법을 따랐으며, 고용관련 18개 항목을 특정 집단 대상(Special case), 특정 활동 유도(Targeted), 면제(Exemption), 구조적 조치(Structural)에 따라 분류함
- 특정 집단 대상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시행되는 면제나 감면항목에 대한 분류
  - 특정 활동 유도는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특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항목에 대한 분류
  - 면제는 단순 면제 항목에 대한 분류
  - 구조적 조치는 이중과세를 피하는 등 기준조세체계와 관련된 면제 및 감면항목에 대한 분류

□ 위의 항목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층 분석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6가지 논점 중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음

<표 III-8> 영국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분석 일부

항목명	Employer supported childcare
항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55파운드까지 보육 바우처를 면세로 제공 가능</li> <li>주요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는 부모에게(전적으로/부분적으로)생활을 의지하며 부모와 동거해야 함</li> <li>2) 자녀보육제공은 입증된 제공자에 의해서만 가능함</li> <li>3)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li> </ol> </li> <li>(후략)</li> </ul>
제도의 유효성, 정책 목적 달성 정도, 폐지 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인 근로자의 재취업 및 고용 상태의 유지를 장려함</li> <li>-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중 취업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1981년 25% 미만에서 현재 53.1%까지 증가함</li> <li>- 본 조세특례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시대적 흐름상 더 많은 부모들이 직업을 갖고 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제도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li> </ul>
납세자들의 제도 인지 정도 및 수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도는 자녀를 둔 근로자(내국인)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략 45,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li> <li>- 기본세율 납세자가 평균적으로 한 주에 2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으며 5,028파운드를 지출하는 경우 90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음</li> <li>- 본 제도의 사용자 중 83%가 기본세율 납세자이며 대부분 육체노동자 및 비숙련 노동자임</li> <li>- 총감면액은 대략 6억파운드임</li> </ul>
감면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 납세순응비용, 세제 복잡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큰 운영비용은 보육 제공업체 섭외나 근로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제도 설계 및 운영비용임</li> <li>- 아래의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제도가 필요한 직원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여부</li> <li>2)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세부 정보</li> <li>3)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육원의 세부 정보</li> <li>4) 보육 서비스 이용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제공 여부</li> </ol> </li> <li>(중략)</li> <li>- 제도 수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매년 기본소득증명을 완료해야 함</li> <li>- 이 프로세스는 복잡하지 않게 설계되었으나 추가 관리 부담을 초래함</li> </ul>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정부 지출 보고서를 통해 본 제도가 제도 도입 목적인 부모인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가 장려되고 있음이 입증됨</li> <li>- 초기 제도설계 이후 기본소득증명 관리 이외의 추가적 관리 요소가 없어 고용주들의 육아지원 운용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운용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됨</li> <li>- 따라서 본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언함</li> </ul>

자료: Office of Tax Simplification(2011)

## 사. 호주

- 호주의 경우 매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규모추정 이외의 평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호주 회계감사원은 2008년과 2013년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조세지출 검토 체계 성립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무부에 제언하였으나 실제 관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예산안에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 분석 포함
  - 다른 관할청과의 협업을 통해 조세지출 보고서에 대한 외부 보고 기준 개발
  - 조세지출 검토 시 아래의 고려항목 추가 검토
    - 다른 주의 프로그램 및 영 연방국 정부 프로그램과 호주 조세지출 간 상호작용
    - 조세지출의 경제 왜곡 효과
    - 호주 국세청과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납세순응비용
    - 대체 가능 정책수단과의 비교
  - 기존 세제항목에서의 조세지출 분류 확인 작업
  - 국세청과 함께 조세지출 규모추정 필요자료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추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요청 가이드라인 구축
  -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규모가 큰 조세지출 중 세수증감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발표하지 않는 이유 기재
  - 규모추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석 대상, 기간 등을 포함하는 명문화된 분석체계 구축
  
- 2015년 의회 보고서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재무부는 조세지출 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함
  -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은 매년 예산 개편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조세지출만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은 없음
  
- 2016년 의회 지적사항에서는 조세지출이 연간 평가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재정지출보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함

- 정책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약하고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이 없으며 정기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음
- 조세지출 규모에 추정 이외의 성과관리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아.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 추정 이외의 별도 평가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성과보고서(RAP, rapports annuels de performances) 작성 시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식으로 관리함
  - 실질적으로 조세지출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없음
-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로 인한 고용 창출을 분석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능별 분류의 하위 프로그램별로 각 연도에 할당한 고용인원 수 및 실제로 창출한 고용인원 수를 명시함
  - ‘할당한 고용인원’이란 해당 연도 재정지출 사업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정규직 고용인원을 의미하며, 할당한 고용인원 수는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보고서에서 산출하는 것으로 추정됨
- 모든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기능별 분류에서도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인원 할당 여부를 결정함
  - 성과보고서를 발표한 대부분의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서 정규직 고용인원이 할당되어 있음
  - ‘분류 불가능’, ‘영토와 주거의 평등’, ‘국가재정 확보’, ‘이민, 망명 및 통합’,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상환 및 공제’의 기능별 분류의 경우 고용인원을 할당하지 않음

<표 III-9> 프랑스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고용인원 할당 및 성과에 대한 내용

기능별 분류명	고용인원 할당	실제로 채용한 인원 수 명시	할당 고용인원 달성 여부	비고
국가의 외교행위	○	○	×	
국가의 일반 행정 및 영토 관리	○	○	×	
농업, 식량, 농촌의 임산업	○	○	×	프로그램별로 달성 여부 다름
공적개발지원	○	○	×	
참전용사 지원 및 기념	○	○	○	
국가의 통제와 지침	○	○	×	
분류 불가능	×	×	-	
문화	○	○	×	
국방	○	○	×	
정부 활동 감독	○	○	×	
생태, 지속가능한 개발	○	○	×	
경제	○	○	×	
영토와 주거의 평등	×	×	-	평가 목차에는 고용인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나 실제 할당된 고용인원이 없음
국가재정 확보	×	×	-	
학교 교육	○	○	×	프로그램별로 달성 여부 다름
공공재정 및 인사관리	○	○	×	
이민, 망명 및 통합	×	×	-	
정의	○	○	×	프로그램별로 달성 여부 다름
미디어, 도서 및 문화산업	×	×	-	

기능별 분류명	고용인원 할당	실제로 채용한 인원 수 명시	할당 고용인원 달성 여부	비고
해외	○	○	×	
영토 정책	○	○	×	
공권력	×	○	-	할당된 고용인원이 없었으나 간략하게 법제 관련 공무원 임용 수 명시
연구 및 고등교육	○	○	×	
사회보장제도	×	×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	-	
상환 및 공제	×	×	-	
건강	×	×	-	해당 분야 고용은 다른 기능별 분류 담당
안보	○	○	×	
연대, 통합 및 평등한 기회	○	○	×	
스포츠, 청소년 및 커뮤니티 활동	×	×	-	해당 분야 고용은 다른 기능별 분류 담당
고용 및 노동	○	○	×	

자료: 프랑스 예산국 성과평가 포럼 웹사이트(<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 대부분의 경우 할당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채용하지 못하였으나, 할당 인원 수와 실제 고용인원 수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 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하위 프로그램별로 할당 고용인원 수와 실제 고용인원 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표 III-10〉 주요국의 조세특례제도 성과관리체계 요약

국가	조세특례제도 성과평가
캐나다	매년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한 조세지출 평가와 불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조세지출 검토가 재무부 주관하에 진행됨
아일랜드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분석수준 및 분석 기한을 달리하며 사전·사후평가로 나누어 조세지출 도입 시 혹은 일정 기간 후 재무부 주관하에 진행됨
미국	「정부성과관리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출과 함께 조세지출도 평가하나 타 정책 수단들에 비해 분석 수준이 미흡하며, 회계감사원에서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들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일본	총무성의 정책평가 중 일부로 진행되며 매년 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부처별로 사전·사후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법인세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 투명화법」에 따라 의회에서 재검토함
독일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조금 보고서에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일부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이 진행됨
영국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별로 성과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권고함
호주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항목당 규모를 추계하는 것 이외의 뚜렷한 성과평가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프랑스	재정지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시 관련 조세지출을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이외의 조세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찾을 수 없음

### 3. 국내외 고용효과연구 사례분석<sup>14)</sup>

-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고용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들을 정리함
  - 제도별로 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용 관련 제도를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는지 살펴봄
  -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함

14) 본 절의 내용은 류덕현 외(2017)의 ‘제IV장 노동수요와 조세지원정책’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심화·발전시킨 것임

## 가. 미국 연구사례

### 1) 신규고용세액공제(New Jobs Tax Credit; NJTC)

- 신규고용세액공제(New Jobs Tax Credit; NJTC)는 카터 행정부 시절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1977년 도입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안중범 외, 20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다음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전년도 총임금지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 전년도 총연방실업보험료(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FUTA)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의 102%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 공제액 한도
    - \$100,000 또는 연방실업보험료(FUTA) 부과 기준 소득의 25% 중 적은 금액
  - 당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과거 3년간 소급공제 또는 7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McKevitt(1978)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NJTC의 고용증대효과를 30만명 수준으로 추정함
  - 미국의 가장 큰 중소기업협회인 National Federation for Independent Businesses (NFIB)의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함
    -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기업이 NJTC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제 고용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제도로 인해 몇 명의 추가적인 고용을 하였는지 등을 문의함
  - NJTC의 수혜기업에 의해 비수혜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제도의 고용효과를 30만명으로(개인사업 고용의 9% 정도) 추정함
    - 1명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6,500으로 추정함
  
- Perloff & Wachter(1979)의 경우 NJTC의 고용효과를 70만명 수준으로 추정함
  - 분석 자료는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기업을 제도 인지 여부,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지 여부 등으로 구분함

- 먼저,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NJTC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함
  - 다음으로는, 인지하고 있던 기업 중 제도로 인해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함
  - 총고용인 수, 지역, 기업형태, 산업군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기업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NJTC의 고용증대효과가 약 70만명이고, 1명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지출은 \$2,000으로 추정함
- Bishop & Haveman(1979)는 NJTC의 효력이 미치는 15개월 동안 고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함
- 건축산업과 유통산업의 월별 고용, 노동시간, 임금, 기타 중간재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Two-stage least squares(2SLS) 방식으로 제도의 고용효과를 추정함
  - 추정결과, 1977년 중반부터 1978년 중반까지 총고용증대효과는 약 130만명으로 나타남
    - 건축산업의 경우 고용률이 8.2~9.9%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유통산업은 3.4~4.0%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전일제보다 시간제 고용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Bishop(1981)은 Bishop & Haveman(1979)의 후속연구로 NJTC의 총고용증대효과를 40만명으로 추정함
- Bishop & Haveman(1979)과 마찬가지로 월별 고용, 노동시간, 임금 자료 등을 이용하였음
  - 추정결과, 1977~78년 기간 동안 건설 및 유통산업의 총고용증대효과가 40만 명이었으며, 이는 전 산업에 걸친 총고용증대효과의 40% 수준임
- 반면, Tannenwald(1982)는 실증분석을 통해 NJTC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비효율적 제도였다고 주장함
-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제도로 인해 세후임금이 10% 감소할 경우 신규고용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제도 기대고용효과의 2% 수준을 밑도는 결과임

- 또한 일자리 하나를 늘리는 데에 드는 비용은 \$14,100~17,100 사이로 추정되어 선행연구들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

## 2) 취약계층 고용세액공제(Targeted Jobs Tax Credit; TJTC)

- 미국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한 새로운 공제제도인 취약계층 고용세액공제(Targeted Jobs Tax Credit; TJTC)를 도입하여 신규고용세액공제(NJTC)를 대체함
  - 사회적 약자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함
  - 정책 대상자를 장애인, 복지수혜자, 저소득층청년, 참전용사, 전과자 등으로 한정함
  - 공제금액
    - 1986년 이전: 고용 첫해에는 임금 중 첫 \$6,000에 대해 50%를, 둘째 해에는 25%를 세액공제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1986년 이후: 고용 첫해에 임금 중 첫 \$6,000에 대해 40%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Martinez et al.(1991)는 TJTC의 고용증대효과가 저소득층, 소규모 소매점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보임
  - 분석자료는 미 노동부, 재무부 자료, 13개주의 개인 및 기업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함
  - 분석결과, 수혜기업 중 절반 정도가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도를 통해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소매점의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남
- Hollenbeck & Willke(1991)은 TJTC의 고용증대효과가 남성 유색인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 실증자료로는 Employment Service Automated Reporting System(ESARS) 자료, 실업보험 자료 등을 결합한 개인별 자료를 이용함
  - 추정결과 백인 남성과 백인, 흑인/히스패닉 여성은 TJTC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TJTC의 적용대상에 포함 여부가 임금에 미친 영향분석에서 흑인/히스패닉 남성의 경우 추정계수가 \$38, 백인 남성의 경우 -\$72, 백인 여성은 -\$82, 흑인/히스패닉 여성은 -\$103이었음
- 즉,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 주에서 TJTC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유색인 남성을 제외하면 제도에 포함된 경우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음

- Bishop & Montgomery(1991)은 TJTC의 고용증대효과가 청년층에 집중됨을 확인함
  - 3,500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TJTC로 인해 13~30%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그러나 고용주에게 지급된 세액공제액 중 최소 70%는 보조금 없이도 고용되었을 근로자에 대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고용주에 대한 단순 이전지출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았음

- O'Neill(1982)은 TJTC 도입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숙련 노동자 고용비용이 20% 감소하였음을 밝힘
  - 설문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인 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수요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함
  - 분석결과, 18세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 자리(job vacancies)의 수가 120만개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비용이 20% 감소함
  - 그러나 TJTC의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함

### 3) 근로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 미국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계층의 고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취업계층 고용세액공제(TJTC)를 근로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로 대체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는 은퇴군인(retain veterans) 또는 저소득 가정구성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경우 임금지급액의 25% 또는 40%를 고용주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Levine(2005)은 WOTC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임
  -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 주에서 WOTC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제시함
  - 그러나 WOTC의 혜택을 받은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세액공제가 실제로 기업들의 고용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임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저자는 매우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4) 기타 미국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 Bartik(2001)은 미국 노동시장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Welfare Reform,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Welfare-to-Work 프로그램, TJTC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그 결과,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증대는 전반적으로 노동공급 측면보다 노동 수요 측면의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정책 타깃팅(targeting) 측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저자는 실업률이 높은 부분에 조세지원을 해주고, 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의 고용주에게 단기적인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제안함
- Kluge(2006)의 연구는 구미 국가들의 임금보조정책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대표적 연구임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행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관련 실증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정책수단별 사업효과성을 비교·분석함

- 분석결과 사업유형별 효과성이 고용 서비스·규제, 임금보조, 직업훈련, 공공일 자리창출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임금보조제도의 고용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함
- Card et al.(2010)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직업탐색보조, 직업훈련은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공공일자리창출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995년에서 2007년까지 수행된 97개의 연구를 정리한 결과이며, 이들 연구에서 다룬 노동관련 정책은 199개임
  - 이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직업탐색보조(job search assistance)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관측되었으나, 공공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부정적이었음
  -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국내 연구사례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윤성만·박진하(2015)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
  - 해당 연구는 고용창출지원세제 관련 법안의 주요 개정이 있었던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함
  - 분석을 위해 KIS-Value의 개별기업별 재무자료를 활용함
  - 분석결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수요 창출 및 투자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고용수요창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임
- 김동훈(2016)의 연구 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발견함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됨
  -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제조업종보다는 비제조업종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경엽 외(2011)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도입되므로 고용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자본의 세부담은 1조 5천억원 증가하고 노동의 세부담은 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따라서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자본비용 상승을 동반한 임금보조방식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고용증가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본 연구에서 별도의 실증분석을 수행한 것은 아니며,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주장함
  -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송원근 외(2013)의 연구 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인해 2012년 신규채용 건수가 오히려 2011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였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의 효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건설업, 금융업 등 225개사의 2011년 채용 인원 합계가 26,275명이었으나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인원은 25,728명으로 2.1% 감소함

## 2)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 심충진·이준규(2011)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함
- 분석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노동수요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비서비스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 노동수요와 더 많은 양(+)<sup>1)</sup>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병구 외(2012)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용촉진목적의 조세정책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뚜렷한 고용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함
- 분석 방법론은 설문조사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함
  - 설문조사결과, 서비스업 중사기업들이 생각하는 고용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지출정책이나 금융지원정책이 아닌 고용촉진목적의 조세정책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연관분석결과 서비스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중에서는 법인세 인하나 사회보험료 인하에 비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촉진세가 가장 큰 효과를 보임
    - 서비스 산업 중 상대적 저부가가치 산업뿐 아니라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복지와 연계된 서비스업인 교육, 보건, 그리고 사회 서비스업 등에서의 조세정책에 의한 고용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용촉진세(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유사)의 재정비용 10억원의 직접고용효과는 166.96명, 재정비용 10억원의 총고용효과는 479.25명, 총취업효과는 607.17명으로 나타남
- 전승훈(2010)은 노동수요함수 및 탄력성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함
- 노동수요함수 및 탄력성 추정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임금근로자조사』 등의 자료를 사용함
  - 분석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함
    - 노동수요탄력성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행태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적용 등에 따라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 사회보험료 감면

- 장지연 외(2010)가 노동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감면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자료를 지역-연도별로 사용하여 Blanchflower-Oswald의 지역균형시장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추정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전액 감면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규모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클 경우 사용자에 대한 보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함
  
- 유한욱(2011)의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이 우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계수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최적 임금보조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이나 불안정한 노후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1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
- 한상운·성주호(2013)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함
  - 영세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 52명과 저임금 근로자 161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함
  - 분석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기여도 인식이 직장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저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전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두루누리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유경준 외(2013)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회보험 가입 증가 순효과(net effect)를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음
    - 10~29인과 10인 미만 사업체를 구분하여 이중차분법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유경준 외, 2013)
  -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입자가 2.7% 증가하였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가 한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제도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병희 외(2014) 역시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분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를 구성하였음

-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선형 확률모형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가입률을 소폭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저자들은 두루누리 사업이 생애 최초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율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회보험이 가입을 통해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김예성 외(2015)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분석을 위해 근로자 2,132명과 사업주 2,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분석결과, 세원 노출이나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당장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함
  - 또한, 수원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입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 비해 가입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0~40대의 근로자와 소득이 높은 층에서는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90%가 넘는 가입률을 나타냈지만, 비정규직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과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인 10~20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 중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저자들은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홍보방식 전환 및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 획일적인 지원요건의 완화

- 유경준 외(2016)는 두루누리 사업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지만 고용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분석을 위해 고용보험 DB와 국민연금 DB 행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방법론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피보험자 수의 증가는 주로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 본 사업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증가시켰으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음
  
-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고용 관련 조세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I-11>과 같음

<표 III-11> 노동수요 관련 조세의 효과성 - 선행연구 정리

제도	저자	효과 추정 결과
NJTC	McKevitt(1978)	30만명의 고용증대효과(개인사업 고용의 9% 정도)
	Perloff & Wachter(1979)	70만명의 고용증대효과
	Bishop & Haveman(1979)	1977년대 중반부터 1978년 중반까지 130만명의 총고용증대효과. 건축산업의 경우 고용률이 8.2~9.9% 증가, 유통산업은 3.4~4.0% 증가
	Bishop(1981)	건설 및 유통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77~78년 기간 동안 40만명의 총고용증대효과(총고용증대의 40%)
	Tannenwald(1982)	제도로 인해 세후임금이 10% 감소할 경우 신규고용은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기대고용효과의 2% 수준임
TJTC	Martinez et al. (1991)	수혜기업 중 절반 정도가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도를 통해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소매점의 저임금 일자리였음
	Hollenbeck & Willke(1991)	임금에 미친 추정계수가 흑인/히스패닉 남성 38\$, 백인 남성 -72\$, 백인 여성 -82\$, 흑인/히스패닉 여성 -103으로 백인 남성과 백인/흑인/히스패닉 여성은 TJTC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Bishop & Montgomery(1991)	13~30%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청년층(25세 이하)에 고용증대효과 집중

제도	저자	효과 추정 결과
	O'Neill(1982)	18세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리(job vacancies)의 수가 120만개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비용이 20% 감소함
WOTC	Levine(2005)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5개 주의 16개 기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로부터 WOTC가 채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함
미국의 노동 시장 정책 전반	Bartik(2001)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에 비해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증대에 효과적임
	Kluge(2006)	메타분석 결과 제도의 효과성이 서비스·규제, 임금보조,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창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Card et al.(2010)	직업탐색보조, 직업훈련 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관측되었으나, 공공일자리창출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음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조정업 외(2011)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도입되므로 고용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송원근 등(2013)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건설업, 금융업 등 225개사의 2011년 채용 인원 합계가 26,275명이었으나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인원은 25,728명으로 2.1% 감소함
	윤성만·박진하(2015)	노동수요 창출효과가 전체 기업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더욱 효과적임
	김동훈(2016)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제조업종보다는 비제조업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제도	심충진·이준규(2011)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계수값(t값)은 1462.40(9.63)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병구 외(2012)	고용촉진세(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유사)의 재정비용 10억원당 직접고용효과는 166.96명, 총고용효과는 479.25명, 재정비용 10억원당 총취업효과는 607.17명으로 나타남
	전승훈(2010)	노동수요 탄력성이 작고,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적용 등의 이유로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함
사회 보험료 감면	장지연 외(2010)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감면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고용규모가 5.6% 증가함
	유한욱(2011)	사회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이 우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월성이 보장되지 않음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한상운·성주호(2013)	영세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효과가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짐
	유경준 외(2016)	적용 지역의 근로자 고용률을 0.12%p, 총고용률을 0.18%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병희 외(2014)	고용보험가입률을 소폭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유경준 외(2016)	두루누리 시범사업과 두루누리 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각각 2.4%와 2.7%,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각각 3.1%와 2.0% 증가시켰으나, 고용규모에는 두 사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함의

-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을 볼 때,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함
  -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만한 내용도 있고, 적용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음
  
-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고용영향평가는 그 평가가 단독으로 연구과제이며 제공되는 자료 등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적용하기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현행 고용영향평가는 그 고용효과 분석만으로 평균 5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와 거의 동등한 규모의 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상 심층평가 수행기간은 5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기간으로 볼 때 현행 고용영향평가가 거의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연구기간뿐 아니라 연구진의 규모에서도 유사한 수준임
    - 따라서 현행 고용영향평가에서 진행하는 모든 평가항목을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도입하는 것은 현행 평가 구조에서는 사실상 곤란함
  - 특히, 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제한된 요소들이 상존함
    - 현행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질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있음
    - 정교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질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재정지출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고용에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기재하고 제출하게 함으로써 효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조세지출은 그러한 내용을 기업들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 현행 고용영향평가에서 원론적으로는 양적 효과를 거시적/미시적 내지 직접/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된 보고서를 볼 때 이를 모두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미시계량방법을 이용한 직접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각 제도의 특성이나 가용자료의 수준에 따라 연구진이 효과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

-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사례를 볼 때,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에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사례도 많지 않지만 간접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간접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량적으로 그 효과의 크기를 정교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직접 효과만을 성과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간접 효과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 미시계량방법으로 정량화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간접 효과 전체를 미시계량방법으로 정량화하여 보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산업연관분석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살펴볼 수는 있으나 그 정량적인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바탕으로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에서는 간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지언정 간접 효과에 대한 불확실한 정량분석은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적절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조세특례제도 각각의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는 미시계량방법으로 정량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미시계량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군(정책 수혜집단)과 대조군(수혜집단과 정책 수혜 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유사한 비수혜집단)에 대한 실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정책 전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증자료가 모두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 최소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실증자료만 있어도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한 방법론(예를 들어, 도구변수법 등)이 있음
    -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구분된 실증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제도의 순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IV.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 IV.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 1.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 가. 고용(취업)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구분

-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 및 고용구조,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교육시스템, 조세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물임(오상훈·이해춘, 2016, p. 7)
  - 조세지출은 조세제도 중 일부로서 주로 노동의 가격인 임금에 영향을 주게 됨
  
- 일자리 창출 요인은 1) 노동수요 측면, 2) 노동공급 측면, 3) 일자리 매칭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동수요: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노동공급: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일자리 매칭: 인적자본 수요·공급의 불일치, 노동시장의 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청산에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제고, 임금과 다른 투입요소와의 상대가격,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노동시간과 관련된 제도(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유연성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 등이 영향을 주게 됨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유보임금, 보육,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 등이 영향을 주게 됨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남성, 여성 공히 비탄력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매칭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의 연계 등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게 됨

[그림 IV-1]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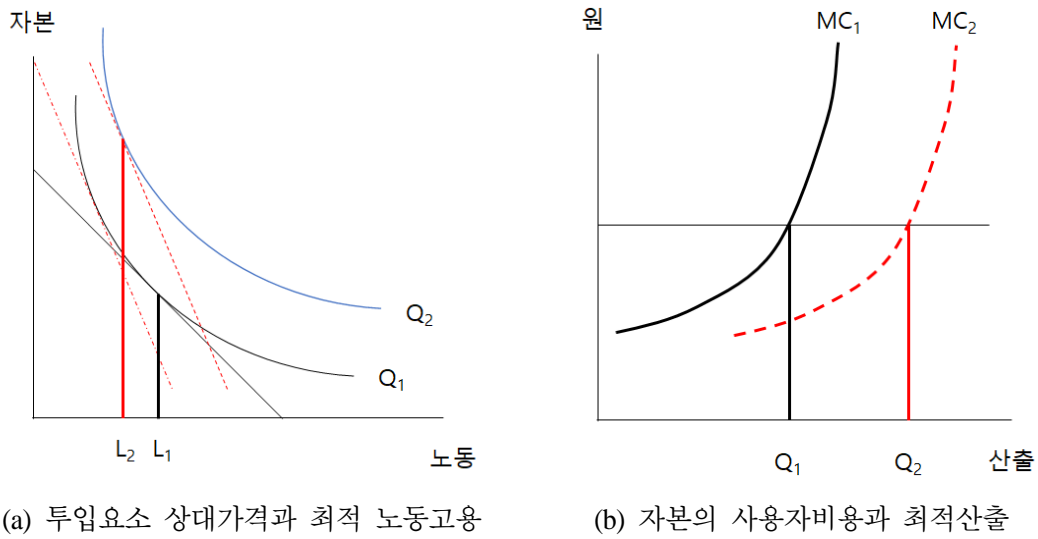
자료: 오상훈·이해춘(2016), p. 8의 그림을 일부 수정

- 일반적인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재정투입 여부,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재정사업: SOC사업, 정부조달, 정책자금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됨
  - 비재정사업: 법령의 제/개정, 규제완화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됨
  - 조세지출사업: 조세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을 통해 일자리의 창출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됨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정부의 개입방식은 조세지출이라는 특정한 방식에 국한하고 있음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여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사업비 지출 또는 법·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 간접적으로 고용을 촉진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직접고용과 민간의 간접고용(고용촉진)으로 나누고 있음
  - 정부 직접고용: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 민간 간접고용: 산업, 기업 지원 및 발전대책, 대상별 취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
  - 예컨대, 특정산업 육성, 기업별 지원 및 투자에 따른 노동수요를 확대시키는 경우, 직접투자(펀드조성, 정책자금 융자 등), 투자유도(세액공제,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보조금(시설개선, R&D 지원, 고용촉진), 해외진출 지원 등
- 위의 분류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노동시장에 민간 간접고용 지원 방식임
- 조세지출은 다시 일자리 창출(고용 혹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직접’, ‘간접’, ‘무관’으로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은 평가대상 조세지출이 직접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의 창출 혹은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접’은 평가대상 조세지출이 직접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의 증가 혹은 감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고용 혹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무관’은 평가대상 조세지출이 고용 및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작을 경우
- 이러한 조세지출의 구분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 직접 효과의 경우에는 수요측에 영향을 주는 조세지출과 공급측에 영향을 주는 조세지출로 구분
  - 고용평가의 주된 관심은 일자리 창출 여부이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보다는 수요측 요인이 분석의 중심임
  - 공급측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지출은 특별한 경우에만 고용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수요측 요인은 다시 고용의 양에 미치는 조세지출과 고용의 질에 미치는 조세지출로 구분됨
  - 고용의 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세지출은 반드시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 가능하면 고용의 질과 병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일제 균등화(full-time equivalent), 임금할인(평균임금/산업평균임금), 연인원(man-year) 개념 등을 반영함으로써 고용의 질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고용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보조지표로서 고용의 양적인 요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의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투입요소 간의 상대가격 체계 변화에 따라 노동에서 다른 투입요소의 대체 때문에 발생하는 대체효과, 산출량 증가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산출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대체효과: 자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춰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져 노동의 고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산출효과: 기업의 산출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 노동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자본(혹은 다른 투입요소)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조세지출이 노동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아래 [그림 IV-2]에 제시되어 있음
- 특정 조세지출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대체효과에 의해서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대체효과로 고용이 감소함(패널(a) 참조)
  - 동시에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는 기업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낮춰 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패널(b) 참조)
  - 산출이 증가할 때 노동이 정상투입요소(normal input)인 경우 노동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조세지출의 경우 자본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노동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세지출이 간접 효과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의 문제가 됨

[그림 IV-2] 자본에 대한 조세지출과 노동의 고용



- 간접 효과 중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경우에는 산업효과를 통해 해당 투입요소를 공급하는 산업이 육성 및 진흥될 수 있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음
  - 예컨대,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경우 스마트공장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나. 고용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

- 우선, 각 조세특례제도 항목에 대하여 고용 및 취업 관련 명시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효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효과로 구분함
-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가용 자료와 분석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자리, 고용, 취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 효과의 경우 대체효과, 산출효과, 산업효과 등을 통해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료의 가용성, 평가의 난이도, 효과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용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 효과의 크기에 따라 고용효과 분석을 평가에 포함하려 한다면 기준이 되는 크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며, 크기도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 다만,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가’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접 효과로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용자료로 분석이 가능할 경우라면 고용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겠음
    - 여기에서 다루는 투자는 기업의 자본재(각종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 기본 원칙은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기업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석을 권고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조세지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조세특례제도는 직접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고용효과의 성격(직접/간접 효과)과 무관하게 제도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임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준이 될 ‘일정 규모’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나 현행 조세특례제도들의 조세지출규모나 규모별 조세특례제도들의 고용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조세지출규모는 1조원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규모 기준으로 평가대상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도 포함될 수 있고, 직접 효과보다 간접 효과에 의한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의 고려 없이 조세지출규모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현행 조세특례제도 236개(개별세법상의 조세지출 포함) 가운데 심층평가의 기본조건인 조세지출규모 300억원 이상을 만족하는 항목은 55개이며, 이 중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제도는 총 11개임
    - 1조원이라는 기준은 자의적인 것이므로 조세지출규모별 구성의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1) 고용창출과 무관하거나(예컨대, 영세율의 적용), 2) 조세지출 규모가 작은 경우, 3) 자료 획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관련 평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용영향을 평가할 조세특례제도 대상 여부 선정은 고용 창출 목표와의 관련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고용 창출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경우 → 평가대상
  - 2단계: 고용 유지를 요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있는 경우 → 평가대상
  - 3단계: 고용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 평가대상
  - 4단계: 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평가 배제
  - 5단계: 고용과 무관하거나 간접 효과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평가 배제
  - 별도: 목적에 상관없이 조세지출 규모(1조원 이상)가 매우 커서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 평가대상
  
- 1단계는 명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경우 명시적으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조세지출을 지원하고 있음
  
- 2단계의 경우 고용창출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고용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세특례제도가 해당됨
  - 제도가 없었다면 고용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로 말미암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고용창출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3단계의 경우 고용의 질 제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가 해당됨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조)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 제공

□ 4단계의 경우 고용과 관계 있는 문구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임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혹은 산출효과(output effect)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자동화 관련 자본 투자에 따른 사용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에서 자본으로 대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의 생존 및 매출에 기여함으로써 산출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5단계의 경우 고용 및 취업과 무관하거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그 효과가 매우 작은 경우임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내국인이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 유통산업을 위한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본 조항은 기업의 소방시설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둬 소방관련 산업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관련 산업내의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본 조세지출은 저축과 상관 있고 고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2. 고용영향평가 분석모형

### 가. 이론적인 고용효과 평가 원칙

- 조세특례제도 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통일된 기준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으로 고용효과는 연인원(man-year)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에 해당 고용의 연평균 임금/당해 산업 평균임금 비율로 추가적으로 할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와는 다르게 조세지출로 추가적으로 고용된 인원의 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사업자의 평균 임금을 이용하거나 일자리의 질 요소를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모든 일자리 수는 가능하면 1년 단위로 산출하며, 취업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여 조세특례제도 간 효과의 크기를 비교가능하도록 산출하는 것을 제시함
  - 고용형태 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으로 산출함
  - 이는 정량적 고용효과의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연인원(man-year) 기준으로 고용자 수(전업기준)를 측정한다는 의미임
  - 전업근로자보다 근무시간, 근무일수가 짧은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도 전업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다 계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연인원 대신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 근로자 수 기준 역시 검토할 만한 개념임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에서 파생으로 인한 효과의 포함 여부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정부 직접, 민간 간접 효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생된 효과는 측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파생효과란 이른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효과로서 고용

의 창출로 인해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여 창출되는 추가적인 고용효과임(유발 고용이라고도 할 수 있음)

- 고용효과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사중손실(deadweight loss)임
  - 조세와 관련한 사중손실은 주로 조세부과에 따른 총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함
  - 고용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르게 조세지출이 없었어도 채용을 할 회사에 조세 지출을 주는 경우를 의미함
  -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고용 규모 중 해당 제도가 없었어도 고용했을 노동자의 수만큼을 사중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고용평가에서는 대조군(control group)의 고용 변화를 지칭함
  - 재정지출인 임금보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중손실을 50~80%까지 보고 있음 (장지연 외, 2002)
  
- 또한, 이른바 대체효과와 전치효과 등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에 기존 취업된 노동자가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한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고용은 없는 셈임
  -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은 이로 인해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 때문에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나. 분석모형

### 1) 고용영향평가 시 유의사항

-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자는 자칫 정책 수혜대상 집단(처치집단,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집단(비교집단, 대조군) 사이의 평균을 단순히 비교하기 쉬움
  - 처치집단의 선정이 무작위(random)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처치집단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대하여 수혜집단(청년)과 비수혜집단(장년)을 단순비교해서는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이는 경력 및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조세 특례와 상관없이 수혜자의 임금수준이 더 낮을 수 있음

□ 처치집단의 선정이 성과와 무관하다(unconfounded)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평균 처치효과와 평균적인 정책수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평균 처치효과(ATE, Average Treatment Effect)

$$\begin{aligned}\delta_{ATE} &= \{E[Y(1)|D=1] - E[Y(0)|D=0]\} \\ &\quad - \{E[Y(0)|D=1] - E[Y(0)|D=0]\} \\ &= E[Y(1) - Y(0)|D=1] + \{E[Y(0)|D=1] - E[Y(0)|D=0]\} \\ &\quad D_i: \text{처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1의 값을 가질 경우 처치집단임} \\ &\quad Y_{1i}: \text{처치집단의 성과} \\ &\quad Y_{0i}: \text{비교집단의 성과}\end{aligned}$$

- 두 번째 항이 소위 선택편의라고 불리는 항으로 연구자에게 관찰되지 않음
- 평균적인 정책수혜효과(ATET,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delta = E[Y_i(0) - Y_i(1)|D_i = 1]$$

□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이 처치집단이면서 동시에 비교집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잠재적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함

- 잠재적 결과는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일종의 결측치(missing value)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 자료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 분석모형들은 이러한 잠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임

## 2) 고용영향 분석절차

### □ 고용영향 분석절차 개괄

-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음
  - ① 분석자료 탐색
  - ② 분석단위 설정
  - ③ 고용영향 분석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계량지표) 설정
  - ④ 분석을 위한 비교집단 설정
  - ⑤ 추정 모형(방법) 설정
  - ⑥ 변수 구축
  - ⑦ STATA 등 통계프로그램으로 추정모형 추정
  - ⑧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성 평가

### □ 분석자료 탐색

- 실증분석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탐색함
- 먼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패널)데이터 검색을 시도함
- 가용한 자료가 있고 자료에 대한 유저 가이드가 있다면 자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해 유저 가이드를 숙독함
- 설문지를 탐독하여 분석대상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설문지로부터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여 비교집단 설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자료의 구조로부터 적용 가능한 추정모형(방법)을 검토함
- 미시자료를 총량(aggregate) 단위로 전환할 경우 가능한 다른 자료와의 병합(merge) 가능성을 검토함
  - 예를 들어, 가구단위의 미시자료에 가구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지역별 실업률 등의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 분석단위 설정

- 주어진(미시)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석단위를 설정함
- 개인(가구)단위까지의 자료가 가용한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분석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정책변수 혹은 일부 설명변수가 총량(aggregate) 단위로만 주어진 경우 더 작은 미시단위 변수를 총량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적용할 것인지, 혹은 총량단위를 미시단위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개인단위로 분석할지, 가구단위로 분석할지, 아니면 시군구 수준에서 분석할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함

#### □ 종속변수(계량지표) 설정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석대상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즉, 분석대상정책의 취지 및 목표를 파악해야 함
- 해외의 유사한 정책 분석 사례를 검토하여 주로 어떤 지표를 분석했는지 참조할 수 있음
- 국내외 유사 제도와 비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정책에 대하여 어떤 계량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고용영향평가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는 대표적으로 고용률, 종업원 수, 임금수준,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의 경우 고용률 및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음
  - 분석대상이 기업인 경우 종업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상시/임시고용인원 및 정규/비정규직인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임금수준,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 □ 비교집단 설정

- 분석자료를 가지고 정책 시행 전후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데 좋은 비교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전에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처치집단과 최대한 유사한 성격의 집단이어야 하고, 처치 집단과 비교집단의 구분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정책 수혜 여부가 정책 대상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정이 되면 선택편의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한 추정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추정모형(방법) 설정

- 정책 시행 전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패널)자료가 가용한 경우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
- 정책 시행 이후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패널)자료만 가용한 경우 고정효과 모형 또는 도구변수 추정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
- 비모수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성향점수매칭 등 매칭방법 또는 회귀단절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
-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총량자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시자료와 병합하여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변수 구축

- 추정에 적용할 변수를 추출하여 추정식에 사용할 정책변수(대개의 경우 더미 변수)와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를 정의함
-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임의 결측(missing at random)으로 처리하여 결측치가 포함된 관측치를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관측이 가능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하여 결측치 자료를 추정(imputation)하여 분석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결측치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의 결측 가정을 적용하여 결측치 표본을 제외하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렇지 않고 결측치가 적지 않게 포함된 변수가 핵심적인 변수일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변수값을 추정(imputation)하여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수값을 추정(impute)하여 분석에 적용한 경우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추정과정에서 bootstrap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오차(imputation error)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책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해야 함

□ STATA 등 통계프로그램으로 추정모형 추정

- 추정모형 적용에 앞서 먼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별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
- 그래프를 활용한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특히 어느 부문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검정함
- 이분산성을 고려한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을 권장함
- 추정결과의 재현이 가능하도록 변수 추출, 생성, 추정 전 과정을 하나의 파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변수 생성과정 및 추정모형 적용의 단계 단계마다 간략하게 메모를 작성하여 무엇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록함으로써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나 비슷한 분석을 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추정결과를 보기 좋게 표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가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표 제목을 선정할 때 무엇을 추정한 것인지 독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추정결과 표를 읽는 데 필요한 선행·배경지식은 반드시 주석으로 표시해야 함
- 정책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해야 함
  - 일반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수의 절댓값이 작아 경제적으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음
- 추정계수의 크기를 이용하여 정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함

□ 고용효과의 효율성 분석

- 정책수행에 투입된 재원을 파악해야 함
- 효과성 분석에서 추정된 정책변수 추정계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함
  - 정책변수가 정책수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일 경우 추정계수의 크기는 분석단위당 정책의 평균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추정계수에 정책의 총수혜 규모(인원/기업 수 등)를 곱하면 정책의 총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투입된 자원 대비 정책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한 선행연구가 있다면 이 결과를 이용하여 동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면 효율성 수준의 판단에 도움이 됨

### 3) 고용영향 분석을 위한 설문

- 미시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도의 수혜 집단에 따라 기업, 자영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초적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와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로 인한 고용영향과 관련하여 수집해야 할 정보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음
  - 설문지 작성 이전에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와 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수혜대상이 너무 넓어 비교집단과 처치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모든 임금근로자가 정책의 수혜대상라면 비교집단과 처치집단을 임금근로자 내에서 구성할 수 없음
    - 분석목표와 분석모형 등 분석의 기초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설문을 진행할 경우 설문이 지나치게 장황하여 설문에 답하는 대상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답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설문하지 못하여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음
  - 문항 구성 시 문항과 문항 사이의 논리적 흐름, 문항 내 질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필요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설문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시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순서로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설문
  - 재무상태나 수익 등을 알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함

- 상호, 업종 및 업태, 종업원 수, 소재지, 법인설립등기일, 운영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소득, 총자산, 총부채 등
- 법인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을 양도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도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설문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음
  -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 증감에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미치는 영향만을 따로 분류해 낼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조세특례제도 자체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 설문을 통해 제도 인지 여부,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의 효과성 여부의 이유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의 구성으로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조세특례를 받았는지 설문하여 해당 조세특례의 수혜집단인지 구분함
  - 다음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고용인원을 설문하여 증감을 살펴봄과 동시에 문항을 조정하여 상용/임시 혹은 정규/비정규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상세히 조사하는 방법도 있음
  - 해당 조세특례가 없었다면 고용인원을 조정하였는지 물어보는 문항을 통하여 조세특례가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함
  - 또한, 고용증감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순위별로 설문하여 해당 조세특례가 고용에 미치는 중요도를 조사할 수 있음

※ 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예시

(1) 지난 3년간 귀사의 고용인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총 근로자수
2015			
2016			
2017			

(2) 만일 ○○조세특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귀사의 고용인원이 현재와 달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동일
- ② 고용인원을 늘렸을 것
- ③ 고용인원을 줄였을 것

(3) 귀사의 고용인원 증감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경기변동                      ② 매출액                      ③ ...

(요인을 번호를 기입하여 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함
  - 나이, 성별, 직종, 종사상지위, 가구원 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시기,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시기(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경우), 평균 근로시간 등
- 조세특례제도가 노동시장 진입 및 노동시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설문할 수 있음
  - 설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영향을 따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영향에 대한 설문에 앞서 조세특례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설문이 필요함
  - 제도 인지 여부,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왜 그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의 효과성 여부의 이유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음
  - 먼저, 조세특례를 받았는지 설문하여 해당 조세특례의 수혜집단인지 구분함
  - 다음으로, 조세특례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 해당 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노동시장참여 결정이나 근로시간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하여 제도의 인지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는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면 노동시간이 증감하였는지 묻는 문항을 통하여 변동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음
  - 해당 조세특례가 없었다면 노동시장 참여 여부 혹은 근로시간을 조정하였는지 물어보는 문항으로 조세특례가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함
  - 노동시장 참여 여부 혹은 근로시간 조정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설문하여 해당 조세특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중요도를 조사할 수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예시

(1) 지난 3년간 귀하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 월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노동시장 참여 여부	월평균 근로일수	월 급여액	연간 근로개월
2015				
2016				
2017				

(2) 만일 ○○조세특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현재와 달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동일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3)으로
- ② 참여하지 않았을 것  (4)로
- ③ 참여하였을 것  (4)로


(3) 만일 ○○조세특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로시간이 현재와 달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동일  (4)로
- ② 근로시간을 줄였을 것  (4)로
- ③ 근로시간을 늘렸을 것  (5)로

(4) 근로시간을 줄였을 것이라면 월 평균 얼마나 줄였을지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시간  (6)으로

(5) 근로시간을 늘렸을 것이라면 월평균 얼마나 늘렸을지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시간  **(6)으로**

(6) 귀하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7)로**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직업 안정성                      ② 월급여                      ③ ...

(요인을 번호를 기입하여 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7) 귀하의 근로시간 증감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야근수당 지급 여부                      ② 승진 가능성                      ③ ...

(요인을 번호를 기입하여 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4)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보론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전자우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 각 조사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함

##### 온라인 설문조사

- 개인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적합
- 설문조사의 대상이 확실하고 그 대상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접근할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적합한 방법임
- 한 번에 많은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
- 설문 설계부터 분석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음
- 무작위 추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선정과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신분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음

#### □ 전화 설문조사

- 개인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에 적합함
- 무작위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는 데 비교적 용이하며,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전국적 조사를 단시간에 할 수 있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음
- 설문이 길거나 특정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응답자들이 상품판매 전화로 오해하여 설문 참가를 거부할 수 있음

#### □ 전자우편 설문조사

-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적합함
  - 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 혹은 재무담당자가 응답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적 우편조사에 비하여 빠른 시간에 발송이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응답자를 확보할 수 있음
- 응답 방법이 간단하고 24시간 내내 수발신이 가능하며 회송과 동시에 자료수집이 가능하여 시기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 조사대상이 이메일 사용자에 한정되며 응답자의 컴퓨터 친숙도 및 이메일 이용경험의 차이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발생하여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여타 조사방법보다 응답률이 낮음
-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감한 연구주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 면접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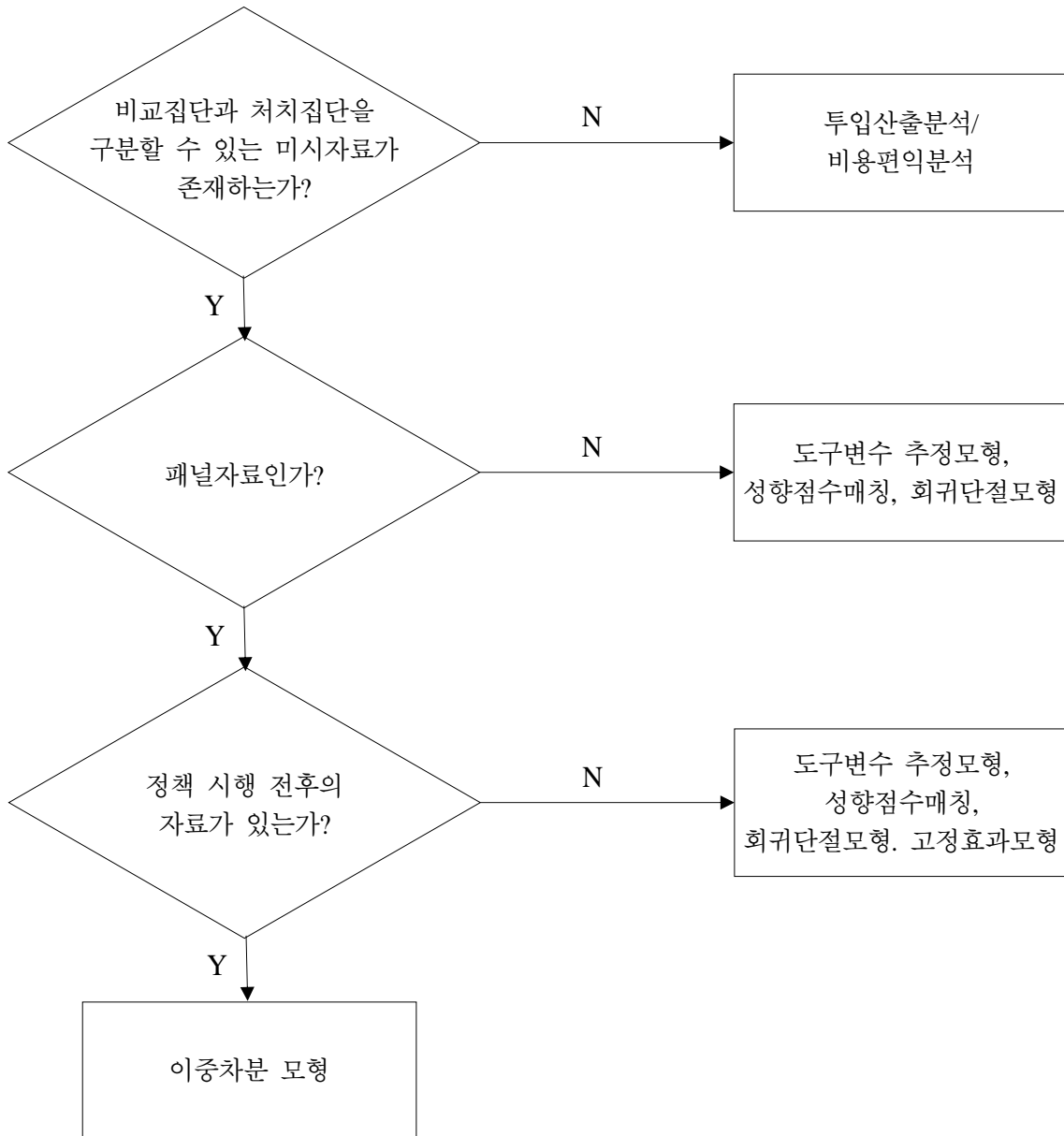
-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적합함
  - 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 혹은 재무담당자가 응답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선택형 질문이 아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등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특정 질문의 응답에 따라 다른 경로로 문항을 이동하는 복잡한 절차의 조사에도 용이함
- 시각적 보조자료 및 면접원을 통한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면접원이 누락된 질문이 없도록 통제할 수 있으며, 모호한 응답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조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함
- 설문 문항이 많은 경우 응답자의 피로도가 상승하여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및 보안 문제로 면접원을 기피하고 설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됨

#### 5) 고용영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

-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영향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별로 적합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정책효과를 식별해 내는 방법론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IV-3] 가용자료 종류별 분석모형 판단 과정



<표 IV-1> 가용자료 종류별 분석모형

	정책시행 전후 자료 사용 가능	정책시행 후 자료 사용 가능
미시(패널)자료가 있는 경우	이중차분 모형	도구변수 추정모형, 성향점수매칭, 회귀단절모형, 고정효과모형
미시자료가 없는 경우	투입산출분석/비용편익분석	

- 미시자료 없이 총량변수만 존재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음
  - 비교집단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거시자료와 병합하여 사용함
  - 혹은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 분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수행함
  - 비교집단 설정이 불필요함
  
- 투입산출모형의 경우 조세지출로 발생한 효과를 일종의 외생적 최종수요액의 변화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를 산출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피평가제도의 조세지출규모를 어떤 산업부문의 최종수요액으로 분류하느냐에 있음
  - 수혜 산업이 투입산출표의 산업 분류, 예컨대 400여개의 기본부문에 도 세세히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본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효과를 산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소분류나 통합중분류를 이용할 수 있음
  - 고용 및 취업효과 산출 시 기준조세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여야 함
    - 기준조세에 대비하여 고용 및 취업효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고용 및 취업효과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다른 대안이 되는 동일 규모 수준의 제도를 시행할 경우의 고용 및 취업효과를 함께 도출하여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미시자료는 있으나 횡단면 자료만 가용한 경우에는 1) 회귀분석, 2) 도구변수 추정법, 3) 성향점수매칭 추정법, 4) 회귀단절설계 모형 등을 이용하여 조세지출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할 수 있음
  
- 미시 패널자료의 형태인 경우에는 1) 패널 회귀모형, 2) 이중차분모형 등을 사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개별 패널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개별 패널 자료가 아니라 반복-횡단면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횡단면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추정을 사용할 수 있음

□ 각각의 자세한 방법론은 [부록]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음

### 3. 현행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 적용 대상 분류

□ 본 절에서는 제1절에서 논의된 고용영향평가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구분함

□ 제1절에서 논의된 고용영향평가 선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도는 평가대상에 포함함
  - 도입목적에 고용과 관련된 표현(고용, 일자리, 취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도입목적에 고용의 질과 관련된 표현(소득 증대, 정규직 전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조세지출규모가 일정 수준(1조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도 평가대상에 포함함
-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는 아니지만, ‘기업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고용자원의 수준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의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겠음

□ 이상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특례제도(개별세법상의 조세지출 항목 포함) 중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항목은 총 20개임

- 먼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를 도입목적으로 명시한 항목은 총 19개임
  -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경과규정인 경우(1건)에는 제외함
  - 직접 효과에 대하여 도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접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확한 항목 1개를 포함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경우, 그 도입목적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서 그 도입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해외창출 고용의 국내고용으로 전환 및 유도’가 명시되어 있는바, 두 제도의 도입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 포함함
- 이 중, 심층평가의 기본조건인 조세지출규모 300억원 이상(2016년 실적 기준)을 만족하는 제도는 9개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부녀자 추가공제, 기업상속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제도는 총 11개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한편,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투자와 관련 제도는 총 17개이며, 이 중 조세지출규모 300억원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은 총 6개임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표 IV-2〉 고용영향평가 관련 조세특례제도 항목

구분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규모 (억원)	1조원 이상	고용 관련	평가 대상	투자 관련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특	5	483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18,643	○		○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①1·3	20,945	○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0의2	9				○
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	1,461				○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	2.06				○
7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6의4	0				○
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18	133				○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8의2	1,262		○	○	
1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4,873				○
11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	174.27				○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2	2,199				○
1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3	444				○
1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4	160				○
1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5	0				○
16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	26	8,544		○	○	
17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28의2	0				○
1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2	0.02		○		
19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3	0.06		○		
2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4	158		○		
21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5	558		○	○	
2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	2,325		○	○	
2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2	15		○		
2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3	0.94		○		
2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의4	514		○	○	

구분	조세지출 내역	법률	조문	규모 (억원)	1조원 이상	고용 관련	평가 대상	투자 관련
2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5	55		○		
27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892		○	○	
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4	0				○
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69	12,045	○		○	
30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②	69		○		
3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339.17				○
32	근로장려금	조특	100의2~13	10,529	○		○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5.85		○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18의2	0		○		
3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 121의4	1,504.01		○	○	
36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특	121의3	0		○		
3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2	18,444	○		○	
38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①3	0				○
39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27_3	0				○
4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12_3너	11,611	○		○	
41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①3	436		○	○	
42	연금보험료공제	소득	51의3	17,683	○		○	
43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2; (구)51①4·5; (구)51의2	13,085	○		○	
44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3; (구)51의3 ①2	10,168	○		○	
45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	52①; 59의4①	25,978	○		○	
4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59의4③; (구)52③	11,659	○		○	
47	기업상속공제	상증	18②1	735		○	○	

주: 굵은 글씨체의 조세지출 내역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항목이 본고에서 제안하는 평가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들임

#### 4. 통합서식에 대한 검토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서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
  -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은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하기에 그 정보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일부 정보량을 어느 정도 갖춘 서식도 있으나 한 두 제도로 매우 한정되어 있음
  - 별지 서식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모든 서식이 디지털 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님<sup>15)</sup>
  
- 게다가 다른 고용 관련 서식들도 서식 간 이질성이 커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별 요구 사항을 하나의 서식에 모두 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극복해야 할 난점이 많음
  
- 그렇지만 법인세 신고 법인의 일반적인 고용 정보는 취합할 수 있고, 이는 향후 고용영향평가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sup>16)</sup>
  - 전체 정규직,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규모 및 임금 총액은 현재에도 작성하고 있는 정보임
  - 특정 세액 및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이 제출하도록 해야 함
  - 필요에 따라서 공통 고용정보 몇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고용보험 DB상의 정보와 일치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든 법인세 신고 법인이 작성하기에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고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공통서식을 생각해 볼 경우, 아래 [그림 IV-4]와 같은 예시 서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5) 해당 내용은 2017.12.18.에 실시한 전문가 집단 면담에서 나온 의견임(면담 참석 전문가들은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연구진으로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을 가진 5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음)

16)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서식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DB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하면,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항목 평가에 적합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서식의 작성은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를 떠나 모든 법인세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처치집단(실험군)과 비교집단(대조군)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둘째, 해당 서식의 적용기간도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를 떠나 수혜 전부터 수혜 후까지가 모두 포함되도록 장기 자료로 축적되어야 정책 실행 전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여 제도의 순효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함

[그림 IV-4] 고용 관련 공통서식(예)

**고용관련 공통서식**

<b>① 신청인</b>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	
<b>② 과세연도</b>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b>③ 고용관련 정보</b>		
<b>1. 청년 정규직 근로자</b>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⑦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임금총액	
<b>2. 전체 정규직 근로자</b>		
⑧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임금총액	
<b>3. 상시근로자 인원</b>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총액	

- 만약 위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 제한적인 집단에 대하여 제한적인 기간에만 자료를 수집한다면,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매우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통합서식을 기입하는 데에 투입되는 기업의 시간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집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서식을 운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통합서식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한 통합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는 모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자료의 수집도 매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양자의 자료와 정책 시행 전후의 자료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또한, 이미 국세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해당 근로자가 속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통합하는 것이므로 가용자료에 대한 가공작업이 됨
  - 따라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합한다면 추가적인 통합서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자별 통합자료는 상당히 많은 정보량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가공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제공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임
  - 사업자별 사업자에 속한 근로자 개별 근로소득 정보만 통합하면 되나,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자료에서 근로소득 정보만 별도로 추출하여 각 사업자의 정보에 추가해야 함
  - 표본 수가 천만개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정보와 표본 수 60만개 이상인 신고 법인에 대한 정보의 결합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 단적인 예로, 해당 작업은 국세청 담당직원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전산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 통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V. 결론 및 정책제언





## V.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함

### 1. 주요 내용의 요약

- (기수행 성과평가 분석) 2015년부터 수행된 총 35개의 평가(의무심층평가: 28개, 예비타당성평가: 7개) 가운데 21개의 평가에서 고용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미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고용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고용효과 분석을 진행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음
    - 간접 효과라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그렇더라도 이를 통해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 기준을 일괄적으로 설정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음
  - 일부 평가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제도 시행기간의 고용인원 단순 변동치나 설문조사상 간략한 문항으로 고용의사나 현황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같음하 기도 함
-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목적상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함
  - 평가대상이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부처 및 지자체별 주요 재정지출사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등으로 한정적임

-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제안된 제도에 대해서도 대상선정 과정을 거쳐 평가 여부를 결정함
  - 분석방법에는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병행하며, 미시적 분석은 가용 데이터 수준에 따라 분석 수준과 범위가 결정됨
  - 고용영향평가 연구과제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준하는 연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바,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에서 수행하는 모든 분석을 모두 다루는 것은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OECD 주요국의 사례분석) 8개국(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제한적으로만 고용영향평가를 성과평가에 포함하고 있음
- 명시적으로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지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항목으로 고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기도 함
  - 이 경우에도 간접적인 파급효과나 대체효과 등을 분석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제도를 통하여 직접 고용이 바뀌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함
    - 제도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해도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하지 않음
    - 대부분 매우 보수적으로 고용분석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서식에 대한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의 서식 수준으로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통합서식이나 통합자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현재의 조세특례제도별 서식은 정확히 기재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고 가정하여도 해당 서식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몇몇 제도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실정임
    - 전제한 서식 기입의 정확성 및 서식 자료의 축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통합서식을 고려할 경우, 서식에 고용 관련 항목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음

-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 신고기업들이 모두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조세특례제도 수혜 전후의 기간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가 축적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볼 때,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한 자료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제도의 순고용효과를 분석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들이 원천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의 통합본에는 모두 포함됨
  - 다만, 해당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가공이 불가능한 자료임

## 2.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 안

- (범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를 의미함
- (수행근거)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함
- (평가대상)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의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특례제도의 도입목적에 고용에 관련된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고용에 관련된 표현에는 ‘고용’, ‘취업’, ‘일자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와 같이 고용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도 포함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특례제도의 직전연도 조세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일 경우
  -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인 제도
- (평가방법) 고용영향평가 대상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함

- (미시계량분석) 기업의 고용정보와 재무·납세정보를 통합한 미시자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해당 자료의 정보량 수준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으로 미시계량분석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이 되는 통합미시자료는 아래의 자료로 함
    - 통합미시자료는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한 자료를 기본으로 함
    - 단, 위의 자료 이외에도 사업자별로 고용정보와 재무·납세정보가 통합된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미시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 미시계량분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고용/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 (설문조사) 미시계량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의 방법에 따른 효과분석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 두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함
    -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함
    - (처치군과 대조군의 비교) 설문조사 분석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 수혜업체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이들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사실항목과 의견항목의 구분) 종업원 수와 같은 사실항목과 제도 수혜 시 고용증가 의사와 같은 의견항목을 구분하여 기업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의견항목은 실제 행태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행태를 나타내는 사실항목과는 구분하여 분석해야 함)
  - (고용영향평가 진행 불가 시) 위의 세 가지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료 접근의 제한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고용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행결과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연구자는 각 분석방법별 수행 불가의 사유를 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용영향평가 수행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다음의 사항들을 고용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제도의 도입목적으로 ‘투자’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영향평가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영향평가를 권고함

- 고용영향평가의 의무대상이나 위의 권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구자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
- 수행근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제2항의 효과성 분석 대상 중 ‘고용’에 대한 분석이므로,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시 고용영향평가는 효과성(예비타당성 평가의 경우 경제성) 분석 내에서 기술하도록 함
- 임의심층평가의 경우에도 평가대상의 특수성이 없는 한, 본 고용영향평가 수행 기준에 준하여 분석을 진행함
- 기준안에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함

## 참고문헌

- 강병구·신일순·오준병·이상원·황진영,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2.
- 강성훈·이동규·오종현,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김강수·정우현·박보영,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I):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
- 김동준·이주영·김관수·정규언·이상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I):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
- 김동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효성 분석」, 『지역산업연구』, 39, 2016, pp. 113~142.
- 김석영·이경배·김유경·유한욱·전봉걸·이준상,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
- 김영록, 「조세지출관리 및 평가체계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 김예성·고진수·송애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지역고용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8(3), 2015, pp. 269~284.
- 김유찬·성명재·신상화,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김재진,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김재진·오종현·강성훈,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김재진·홍범교·기은선,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김학수·우석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I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박수진·이경배·이주영·홍종호·오형나,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 박지혜·오승연·윤재형·임상수,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 송원근·유진성·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신상화·박기백·전병욱,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 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심충진·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2:2, 2011, pp. 435~454.
- 안상훈·한성민·이세환·이정동·김기배·곽기현·강태원·백철우, 『2016 조세특례 예비타 당성조사(Ⅱ):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2016.
- 안종석·강성훈·김상겸,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획재 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안종석·신상화·윤지현,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 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오상훈·이해춘,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 동연구원, 2016.
- 오선정·정세은, 『화장품산업 규제 변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 구원, 2016.
- 오종현·신상화·강성훈,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 득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오종현·최충,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유경준·강창희·최바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평가』, 한국개발연 구원, 2013.
- \_\_\_\_\_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 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64:1, 2016, pp. 73~106.

- 유한옥,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정책 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3(2), 2011, pp. 114~143.
- 윤성주·김학수·노민선·김우철·김승래, 『201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Ⅰ):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윤성주·노민선,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윤성만·박진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2015, pp. 161~187.
- 이경희·박문수·김중호,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6.
- 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Ⅰ):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동규·전호철,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Ⅳ: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증장기 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이상엽·한종석,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상엽·홍우형·조형태,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원,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연구』, 고용노동부, 2013.
- 이상원·신일순·윤상진,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6.
- 이철인·김우철·전영준,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화령·조혜정·유한옥·이삼호,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 임병인·김승래·홍범교,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장지연·이병희·은수미·신동균,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전병목·류덕현,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전병목·류덕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전승훈,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정재연·기은선·김재진,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정재호·오종현·하헌구,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V: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조경엽·김현종·황상현,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1.
- 한상운·성주호, 「연금연구: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3(1), 2013, pp. 23~40.
- 한성민·남창우·이세환·유한욱·서은숙,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홍범교·이상엽·윤성만,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I: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홍성훈·이동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홍성훈·조홍종·김수이·정용훈,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Bartik, Timothy J, *Jobs for the poor: Can labor demand policies help?*.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 Bishop, John, “Employment in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industries: The impact of the new jobs tax credit,” *Studies in labor marke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 209~246.
- Bishop, John, and Robert Haveman, “Selective employment subsidies: can Okun’s law be repealed?” *American Economic Review* 69:2, 1979, pp. 124~130.
- Bishop, John H. and Mark Montgomery, “Does the Targeted Jobs Tax Credit Create Jobs at Subsidized Firms?” Working Paper, 1991.

- Card, David, Jochen Kluge, and Andrea Weber,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analysis,” *Economic Journal* 120:548, 2010, F452-F477.
- Hollenbeck, Kevin M. and Richard J. Willke, “The Employment and Earnings Impacts of the Targeted Jobs Tax Credit,” Upjohn Institute Staff Working Paper, 1991, pp. 91~107.
- Kluge, Jochen,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stitute for the Study Labor, 2006.
- Levine, Linda, “The Work Opportunity Tax Credit and the Welfare-to-Work Tax Credi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5.
- Martinez, Matthew G., Carl C., and Perkins, “Information Concerning the Targeted Jobs Tax Credit Program,”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1.
- McKevitt, James, “Jobs Tax Credit,” Testimony at Joint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Administrat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Senate Select Small Business committee, 95th Congress 2nd session, 1978, pp.179~196.
- Moulton, B.R., “Random Group Effect and the Precision of Regression Estimates,” *Journal of Econometrics*, 32(3), 1986, pp. 385~397.
- O'Neill, Dave M. “Employment tax credit programs: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targeting provis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3, 1982, pp. 449~459.
- Perloff, Jeffrey M., and Michael L. Wachter, “The new jobs tax credit: an evaluation of the 1977~78 wage subsidy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69:2, 1979, pp. 173~179.
- Tannenwald, Robert, “Are Wage and Training Subsidies Cost-Effective?—Some Evidence from the New Jobs Tax Credit,” *New England Economic Review*, 1982, pp. 25~34.

#### <미국>

- GAO, Tax policy: Factors for evaluating expiring tax provisions, 2012.
- GAO, Tax expenditures: Opportunities exist to use budgeting and agency performance processes to increase oversight, 2016.

###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1992~2017.

캐나다 재무부, <http://www.fin.gc.ca/access/tt-it/rfte-edff-eng.asp>,

검색일자: 2017.10.19.

### <일본>

일본 총무성, 「정책평가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2010.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등과 관련되는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3.

일본 총무성,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 평가 검사 결과」, 2016.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seisaku_hourei.html),

검색일자: 2017.10.18.

일본 전자법령시스템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100/](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100/),

검색일자: 2017.11.07.

###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 2014.

### <영국>

Office of Tax Simplification, Review of tax reliefs-interim report, 2010.

Office of Tax Simplification, Review of tax reliefs-final report, 2011.

Office of Tax Simplification, Updated list of all tax reliefs as at July 2014, 201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reliefs-review-terms-of-reference/tax-reliefs-review-terms-of-reference>, 검색일자: 2017.10.17.

영국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uk/>, 검색일자: 2017.11.01

FiFo Köln, Copenhagen Economics ApS, ZEW, Evaluierung von Steuervergünstigungen, 2009.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ubventionsbericht, 201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echszwanzigster Subventionsbericht, 2017

### <호주>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6.

Parliament of Australia, Briefing Book-Key Issue for the 45th Parliament, 2016.

호주 국회, <http://www.aph.gov.au>, 검색일자: 2017.10.16.

###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Dépenses Fiscales, 2016.

프랑스 예산국 성과평가 포럼,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documents-budgetaires/lois-projets-lois-documents-annexes-annee/exercice-2016/projet-loi-reglement-rap-2016#.We6NhLUUmUk>, 검색일자: 2017.10.20.

# 부 록





## [부록] 고용효과 추정 방법론

### 1. 정책 시행 전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패널)자료가 가용한 경우

#### □ 이중차분모형(DID Method,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 ○ 이중차분모형의 핵심 가정

- 만일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는 같은 추세를 보였을 것
- 즉, 처치집단 성과의 추세와 비교집단과의 추세 차이는 정책으로 인한 효과로 가정하는 것
- 정책 수혜 여부가 과거 결과값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가정에 위배됨
- 즉, 과거 결과값의 변동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할 경우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회귀식의 구성

$$y_{it} = \alpha_0 + \alpha_1 X_i + \alpha_2 h_{it} + \alpha_3 D_{it} + \delta D_{it} \cdot h_{it} + u$$

$X_{it}$ : 처치집단에 속하게 되는 기준을 포함한 통제변수

$h_{it}$ : 정책 시행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정책 시행 이후 시점

$D_{it}$ : 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처치집단

- $D_i$ 와  $h_i$ 의 교차항의 계수인  $\delta$ 가 이중차분 추정량

##### ○ 처치집단의 정책 시행 전후의 평균 차이에서 비교집단의 정책 시행 전후의 평균 차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책 효과 추정

- 정책효과 추정은 다음과 같음

$$\delta = E[Y_{i,t+1}] - E[Y_{j,t+1}] = (E[Y_{i,t+1}] - E[Y_{i,t}]) - (E[Y_{j,t+1}] - E[Y_{j,t}])$$

$\delta$ : 정책 효과

$i$ : 처치집단 내 개인(기업)

$j$ : 비교집단 내 개인(기업)

$t$ : 정책 시행 전

$t+1$ : 정책 시행 후

- 즉,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과 평균을 비교하여 시간효과와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하여 이중차분 추정량을 얻는 것
  - 두 번 차감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이라 정의함
- 이중차분모형의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 내에서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집(clustering)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하여야 함
- 군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표준오차가 커짐
  - 분산이 커지는 정도는 Moulton factor(1986)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됨

$$V(\hat{\delta}) = [1 + (N_g - 1)\rho_e] V_c(\hat{\delta})$$

$V(\cdot)$ : 통상적인 회귀분석의 분산

$V_c(\cdot)$ : 군집을 고려한 분산

$\rho_e$ : 군집 내 잔차의 상관계수

$N_g$ : 군집 내 개인의 수

- 군집에 강건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hat{V}_c(\hat{\delta}) = (X'X)^{-1} \left( \frac{G}{G-1} \cdot \frac{N-1}{N-k} \cdot \sum_g X_g \hat{\epsilon}_g \hat{\epsilon}_g' X_g' \right) (X'X)^{-1}$$

$G$ : 군집의 개수

$N$ : 관찰값의 수

$k$ : 회귀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의 개수

$\hat{\epsilon}_g$ : 군집을 이용하여 추정한 오차항

- 이렇게 구한 분산의 제곱근인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 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추정한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인  $\hat{\delta}$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군집의 수가 적으면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중차분모형의 한계

- 정책 시행 전, 시행 후 기간을 통틀어 적어도 2기간의 자료가 존재해야 분석이 가능함
- 처치집단의 선정에 있어 성과변수가 주요한 기준일 경우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2. 정책 시행 이후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패널)자료만 가용한 경우

### □ 도구변수 추정모형 (IV Method, Instrument Variable Method)

#### ○ 도구변수 추정모형의 핵심 가정

- 구조방정식에서 본래 추정하고자 하였던 변수와 도구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함
- $Cov(z, x) \neq 0$
- 도구변수와 구조방정식의 회귀식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직교 조건, orthogonality assumption)

$$Cov(z, \epsilon) = 0$$

#### ○ 회귀식의 구성

- 구조방정식:  $y = X\beta + e$
- 축약형 방정식:  $X = Z\Gamma + U, y = (Z\Gamma + U)\beta + e = Z\lambda + \nu \therefore \hat{\beta} = \Gamma^{-1}\lambda$
- 이때  $Z$ 는  $X$ 의 도구변수이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 회귀계수 추정 단계

- 먼저 축약형 방정식의 회귀계수를 구하여  $\hat{X}$ 을 추정

$$\hat{X} = Z\hat{\Gamma} + \hat{U} \quad \text{이때, } \hat{\Gamma} = (Z'Z)^{-1}(Z'X)$$

- 축약형 방정식을 구조방정식에 대입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hat{y}$ 을 추정

$$\hat{y} = Z\hat{\lambda} + \hat{\nu} \quad \text{이때, } \hat{\lambda} = (Z'Z)^{-1}(Z'y)$$

#### ○ 만일 본래의 구조방정식에 있었던 독립변수의 수보다 도구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과대식별되었다고 하고, 더 적은 경우 식별되지 않았다고 함

-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구변수 추정모형을 적용할 수 없음
- 즉, 적어도 내생변수와 같은 수의 도구변수를 찾아야 하며 이를 order condition이라 함
- 과대식별된 경우, 회귀계수 추정 시 적당한 가중치 행렬을 적용하여야 함

$$\beta = (\Gamma' WT)^{-1} \Gamma' W\lambda$$

- 회귀계수의 분산 및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와 동일하며,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음
- 도구변수 추정모형의 한계
  - 가정을 충족하는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예상에 부합하는 도구변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찾은 도구변수가 합리적인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FE Method, Fixed Effect Method)

- 패널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
  - 정책 시행 이후 처치집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처치집단이었다가 비교집단에 다시 속하는 등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정책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음
- 설명변수가 제한적 내생성을 갖더라도 설명변수 한계효과의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의 핵심 가정
  - 고정효과모형은 제한적 형태의 내생성을 허용함
  - 즉, 설명변수는 확률적 개별효과( $u_i$ )와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오차항( $\epsilon_{it}$ )과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strict exogeneity)
  -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의 가정은 완화될 수 있으나, 기간이 짧고 관찰단위가 큰 경우 위의 가정이 지켜져야 함
- 회귀식의 도출과정 및 구성
  - 기초적인 회귀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y_{it} = \beta x_{it} + \delta D_{it} + (u_i + \epsilon_{it}) \quad t = 1, 2, \dots, T; i = 1, 2, \dots, N$$

$u_i + \epsilon_{it}$ : 관찰할 수 없는 오차항

$u_i$ :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오차항

$D_{it}$ : 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처치집단

이때,  $D_{it}$ 의 계수  $\delta$ 가 정책의 효과

- 고정효과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주어진 회귀식을 시간에 대하여 평균을 취하면

$$\bar{y}_i = \bar{x}_i\beta + \delta\bar{D}_i + (u_i + \bar{\epsilon}_i) \quad i = 1, 2, \dots, N$$

- 기초적인 회귀식에서 평균을 취한 회귀식을 빼주면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delta(D_i - \bar{D}_i) + (u_i - u_i + \epsilon_{it} - \bar{\epsilon}_i)$$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delta(D_i - \bar{D}_i) + (\epsilon_{it} - \bar{\epsilon}_i)$$

이를 다시 쓰면

$$\ddot{y}_{it} = \beta\ddot{x}_{it} + \delta\ddot{D}_{it} + \ddot{\epsilon}_{it}$$

- 그러나 STATA에서는 이에 시간 및 개인에 평균을 취한 값을 더해주게 됨

$$y_{it} - \bar{y}_i + \bar{y} = \beta(x_{it} - \bar{x}_i + \bar{x}) + \delta(D_{it} - \bar{D}_i + \bar{D}) + (\epsilon_{it} - \bar{\epsilon}_i + \bar{\nu}) + \bar{\epsilon}$$

- 이를 다시 쓰면

$$\tilde{y}_{it} = \beta\tilde{x}_{it} + \delta\tilde{D}_{it} + \tilde{\epsilon}_{it}$$

- $u_i$ 는 고정효과모형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u_i$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하더라도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에서도 표준오차를 구할 수 있으며, 이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에서 회귀계수의 분산은 기본적으로 선형회귀분석에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점근적으로 다음의 형태를 가짐

$$A\widehat{var}(\hat{\beta}_{FE}) = \hat{\sigma}_u^2 \left( \sum_{i=1}^N \ddot{X}'_i \ddot{X}_i \right)^{-1} = \hat{\sigma}_u^2 \left( \sum_{i=1}^N \sum_{t=1}^T \ddot{x}'_{it} \ddot{x}_{it} \right)^{-1}$$

- 이때  $\hat{\sigma}_u^2$ 는 잔차의 분산이며, 선형회귀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hat{\sigma}_u^2 = \frac{SSR}{N(T-1) - K}$$

*SSR*: Sum of Squared Residual, 잔차제곱합

*N*: 관측치 수

*T*: 총시간 길이

*K*: 모형에 추가한 독립변수의 수

-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에 대한 평균을 취하여 차감하게 되므로 분산에 조정이 필요하며, 이때  $\hat{\sigma}_c^2$ 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

$$\hat{\sigma}_c^2 = \left( \frac{NT - K}{N(T-1) - K} \right)^{\frac{1}{2}} \left( \frac{SSR}{N(T-1) - K} \right)$$

- 고정효과모형의 한계
  -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 불변적인 변수의 회귀계수를 구할 수 없음
  - 횡단면 단위 간 변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음
  - 설명변수가 모든 기간의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므로 설명변수 추가 시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3. 비모수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 □ 성향점수매칭모형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 처치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단순한 경우 처치집단과 비슷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그 기준이 복잡할수록 처치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움
-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라는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슷한 성향점수를 가진 개인 및 기업을 비교
  - 성향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p(X) := \Pr(D = 1 | X) = E[D | X]$$
  - 성향점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처치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프로빗이나 로짓모형, 커널(Kernel)함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성향점수매칭모형의 핵심 가정
  - 처치집단을 선정하는 기준( $X$ )이 성과와는 무관하여야 함
 
$$Y(0), Y(1) \perp D | X$$
  - 처치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비교집단이 처치집단에 포함될 가상의 확률이 0이 아니어야 함
 
$$0 < \Pr(D = 1 | X) < 1$$
- 추정한 성향점수와 가장 가까운 짝(nearest-neighbor)과 매칭하거나, 일정 반지름 안에 있는 성향점수끼리 매칭(radius matching)할 수도 있으며, 성향점수 추정 시 커널함수를 이용한 경우 커널매칭(kernel matching)방법을 사용하고, 일정 구간

안에 있는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 (stratification matching)을 사용할 수도 있음

○ 평균적인 정책수혜효과(ATET)의 추정

- 각 성향점수가 주어졌다고 할 때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s_0(p) := E[Y(0)|p(X) = p]$$

$$s_1(p) := E[Y(1)|p(X) = p]$$

- 이를 다시 쓰면

$$s_0(p) = E[Y(0)|D = 0, p(X) = p]$$

$$s_1(p) = E[Y(1)|D = 1, p(X) = p]$$

- 비모수적 방법으로 성향점수를 추정한 후 평균 처치효과(ATE)를 추정하면

$$\hat{\tau} := \frac{1}{n} \sum_{i=1}^n [\hat{s}_1\{p(X_i)\} - \hat{s}_0\{p(X_i)\}]$$

- 따라서 평균적인 정책수혜효과(ATET)는 다음과 같음

$$\hat{\tau}_t := \frac{\sum_{i=1}^n 1(D_i = 1) [Y_i - \hat{s}_0\{p(X_i)\}]}{\sum_{i=1}^n 1(D_i = 1)}$$

○ 성향점수매칭모형의 한계

-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 시 양과 질의 교환관계가 있음
- 즉, 처치집단에 많은 양의 비교집단이 매칭된 경우 성향점수가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향점수가 비슷한 것만을 매칭시킬 경우 처치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의 개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성향점수를 매칭하는 기준의 주변부에서는 비슷한 성향점수를 가진 개인끼리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회귀단절모형(RD Method, Regression Discontinuity Method)

○ 계단형 모형(sharp design)과 경사형 모형(fuzzy design)으로 나뉨

○ 계단형 모형은 정책 수혜 여부가 독립변수  $x_i$ 의 함수로서, 그 함수의 형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일정한 지점에서 단절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

-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경우 일정 소득 미만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주어지므로 근로장려금 수혜는 소득의 함수

- 추세관계가 비선형임을 감안한 회귀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Y_i = \alpha + \beta_1 x_i + \beta_2 x_i^2 + \dots + \rho D_i + \eta_i$$

- 처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인  $D_i$ 를 이용하여 인과효과 추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Y_i|x_i] = E[Y_{0i}|x_i] + (E[Y_{1i}|x_i] - E[Y_{0i}|x_i])D_i$$

- 이때  $E[Y_{0i}|x_i] = \alpha + \beta_{01}\tilde{x}_i + \beta_{02}\tilde{x}_i^2 + \dots + \beta_{0p}\tilde{x}_i^p$

$$E[Y_{1i}|x_i] = \alpha + \rho + \beta_{11}\tilde{x}_i + \beta_{12}\tilde{x}_i^2 + \dots + \beta_{1p}\tilde{x}_i^p$$

라 하고 조건부 기댓값에 대입하면

$$Y_i = \alpha + \beta_{01}\tilde{x}_i + \dots + \beta_{0p}\tilde{x}_i^p + \rho D_i + \beta_1^* D_i \tilde{x}_i + \dots + \beta_p^* D_i \tilde{x}_i^p + \eta_i$$

- 여기서  $\beta_p^* = \beta_{1p} - \beta_{0p}$ 이며  $\eta_i$ 는 잔차
- 처치 여부를 나타내는  $D_i$ 의 계수인  $\rho$ 가 처치효과
- 유의할 것은 처치로 인해 일어난 급격한 변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비선형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회귀단절모형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절점( $x_0$ )과 충분히 가까운 주변에서의 평균 성과들을 비교하여 모형설정의 정확도와 상관없이 처치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Y_i|x_0 - \Delta < x_i < x_0] \simeq E[Y_{0i}|x_i = x_0]$$

$$E[Y_i|x_0 < x_i < x_0 + \Delta] \simeq E[Y_{1i}|x_i = x_0]$$

- 따라서 다음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begin{aligned} \lim_{\Delta \rightarrow 0} E[Y_i|x_0 \leq x_i \leq x_0 + \Delta] - E[Y_i|x_0 + \Delta \leq x_i \leq x_0] \\ = E[Y_{1i} - Y_{0i}|x_i = x_0] \end{aligned}$$

- 이러한 비모수적 추정은  $Y_{1i} - Y_{0i} = \rho$ 로 표현되는 동일효과 가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평균 처치효과는  $E[Y_{1i} - Y_{0i}|x_i = x_0]$ 임

- 경사형 모형은 독립변수  $x$ 가 주어져 있을 때 처치의 확률 또는 기댓값에 존재하는 단절을 이용하며, 이 단절은 처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처치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됨

- 즉, 일정 임계값에서 처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치확률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D_i|x_i] = P(D_i = 1|x_i) = g_0(x_i) + [g_1(x_i) - g_0(x_i)] T_i$$

- 여기서  $T_i = 1(x_i \geq x_0)$ 이며,  $T_i$ 는  $E[D_i|x_i]$ 가 단절되는 지점 표시
- 계단형 모형과 마찬가지로  $g_0(x_i)$ 와  $g_1(x_i)$ 를  $p$ 차 다항식에 의해 표현하면 다음 식을 도출할 수 있음

$$\begin{aligned} E[D_i|x_i] &= \gamma_{00} + \gamma_{01}x_i + \gamma_{02}x_i^2 + \dots + \gamma_{0p}x_i^p \\ &\quad + [\pi + \gamma_1^*x_i + \gamma_2^*x_i^2 + \dots + \gamma_p^*x_i^p] T_i \\ &= \gamma_{00} + \gamma_{01}x_i + \gamma_{02}x_i^2 + \dots + \gamma_{0p}x_i^p \\ &\quad + \pi T_i + \gamma_1^*x_i T_i + \gamma_2^*x_i^2 T_i + \dots + \gamma_p^*x_i^p T_i \end{aligned}$$

- 도출된 식으로부터  $T_i$ 와 독립변수와의 교차항  $\{x_i T_i, x_i^2 T_i, \dots, x_i^p T_i\}$ 를 앞선  $D_i$ 의 도구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1단계 식은 다음과 같음

$$D_i = \gamma_0 + \gamma_1 x_i + \gamma_2 x_i^2 + \dots + \gamma_p x_i^p + \pi T_i + \xi_{1i}$$

이때  $\pi$ 는  $T_i$ 의 1단계 효과

- 경사형 모형의 축약성은 1단계 식을  $p$ 차 다항식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Y_i = \mu + k_1 x_i + k_2 x_i^2 + \dots + k_p x_i^p + \rho \pi T_i + \xi_{2i}$$

여기서  $\mu = \alpha + \rho \gamma_0$ 이고  $k_j = \beta_j + \rho \gamma_j$  ( $j = 1, \dots, p$ )

- 경사형 모형을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단절점의 가까운 근방에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의  $x_0$  근방에서  $Y_i$ 의 축약형 조건부 기댓값은 다음과 같음

$$E[Y_i|x_0 \leq x_i < x_0 + \Delta] - E[Y_i|x_0 - \Delta < x_i < x_0] \simeq \rho \pi$$

- 이와 유사하게,  $D_i$ 에 대한 1단계는 다음과 같음

$$E[D_i|x_0 \leq x_i < x_0 + \Delta] - E[D_i|x_0 - \Delta < x_i < x_0] \simeq \pi$$

- 그러므로 다음 관계가 성립함

$$\lim_{\Delta \rightarrow 0} \frac{E[Y_i|x_0 < x_i < x_0 + \Delta] - E[Y_i|x_0 - \Delta < x_i < x_0]}{E[D_i|x_0 < x_i < x_0 + \Delta] - E[D_i|x_0 - \Delta < x_i < x_0]} = \rho$$

- 이 경우  $x_0$ 의  $\Delta$  근방에서  $D_i$ 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T_i$ 를 사용하며, 이는 국지적 평균 처치효과
- 회귀단절모형의 한계
  - 처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가 자료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절점을 찾을 수 없음
  -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단절점 주변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하여야 함
  - 단절점 주변에서 비교집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아야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4. 총량변수만 있는 경우

##### □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 비교집단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거시자료와 병합하여 사용
- 혹은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 분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수행
- 비교집단 설정이 불필요
-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투입)과 편익(산출효과)을 동일한 단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제도에 따른 비용은 해당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금액
  - 이로 인해 변동한 고용으로 인한 편익은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분,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 수급자의 복지급여 지급액 감소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세특례제도에 따라 편익과 비용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조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편익과 비용의 항목을 예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해당 제도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그 비율을 계산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B/C ratio
- B/C ratio가 1보다 큰 경우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 비용과 편익의 산정 기준, 현재가치 계산 시 적용한 이자율, 분석대상기간 등에 따라서 B/C ratio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음
-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효과는 측정할 수 없음
- 비용과 편익이 측정되는 단위가 다르면 B/C ratio를 계산할 수 없음

□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sup>17)</sup>

- 총량자료만 존재하는 경우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경제 내에서 투입과 산출 혹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산업부문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내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아래 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와 고용량 행렬을 추가로 병기한 것임
  - 산업연관표는 백만원 단위로, 고용량(혹은 취업량)은 명 단위로 표시됨

<부표 1> 산업연관표와 고용량 행렬의 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i(=j)$	
		1	2	...	$j$	...			$n$
중간투입 ( $i$ )	1	$X_{11}$	$X_{12}$	...	$X_{1j}$	...	$X_{1n}$	$Y_1$	$X_1$
	2	$X_{21}$	$X_{22}$	...	$X_{2j}$	...	$X_{2n}$	$Y_2$	$X_2$
	⋮				⋮			⋮	⋮
	$i$	$X_{i1}$	$X_{i2}$	...	$X_{ij}$	...	$X_{in}$	$Y_i$	$X_i$
	⋮				⋮			⋮	⋮
	$n$	$X_{n1}$	$X_{n2}$	...	$X_{nj}$	...	$X_{nn}$	$Y_n$	$X_n$
부가가치		$V_1 \ V_2 \ \dots \ V_j \ \dots \ V_n$							
총투입액 $j(=i)$		$X_1 \ X_2 \ \dots \ X_j \ \dots \ X_n$							

고용량 (취업량) ( $s$ )	1	$L_{11}$	$L_{12}$	...	$L_{1j}$	...	$L_{1n}$
	2	$L_{21}$	$L_{22}$	...	$L_{2j}$	...	$L_{2n}$
	⋮				⋮		
	$i$	$L_{i1}$	$L_{i2}$	...	$L_{ij}$	...	$L_{in}$
	⋮				⋮		
	$n$	$L_{n1}$	$L_{n2}$	...	$L_{nj}$	...	$L_{nn}$

17) 이상원(2013)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로 표시된  $X_{ij}$  행렬이 중간투입행렬이며, 행렬의 각 원소는  $i$  산업부문에서  $j$  산업부문으로 투입된 투입량을 의미함
- 부가가치는 분배국민소득을 의미하며, 노동분배분(피용자보수 등)과 자본분배분(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생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량(혹은 취업량)  $L_j$ 는  $j$  산업부문에 고용된 피용자 수(혹은 취업자 수)임
- 각 산업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은 총산출과 같아야 하므로, 위의 표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X_{11} + X_{12} + \cdots + X_{1n} + Y_1 &= X_1 \\ X_{21} + X_{22} + \cdots + X_{2n} + Y_2 &= X_2 \\ &\vdots \\ X_{n1} + X_{n2} + \cdots + X_{nn} + Y_n &= X_n \end{aligned}$$

- 이때  $j$  산업에서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i$  산업의 투입량을  $a_{ij} = \frac{X_{ij}}{X_j}$  라 정의할 수 있으며,  $a_{ij}$ 를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의 투입계수라 하고 이를 대입하여 수식을 정리하면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 \cdots + a_{1n}X_n + Y_1 &= X_1 \\ a_{21}X_1 + a_{22}X_2 + \cdots + a_{2n}X_n + Y_2 &= X_2 \\ &\vdots \\ a_{n1}X_1 + a_{n2}X_2 + \cdots + a_{nn}X_n + Y_n &= X_n \end{aligned}$$

- 이때 투입계수로 이루어진 투입계수행렬을 정의하면

$$A = \begin{p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 & \\ a_{n1} & a_{n2} & \cdots & a_{nn} \end{pmatrix}$$

-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변형한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AX + Y = X \rightarrow Y = (I - A)X \rightarrow X = (I - A)^{-1}Y$$

- 일반적으로  $0 < a_{ij} \leq 1$  이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A^n = 0$  임. 이를 이용하여  $(I - A)^{-1}$ 를 구하면

$$\begin{aligned} (I - A)(I + A + A^2 + \cdots + A^{n-1}) &= I - A^n \\ \therefore (I - A)^{-1} &= I + A + A^2 + \cdots + A^{n-1} + \cdots \end{aligned}$$

- 위 식의 역행렬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됨
  - 우변의 단위행렬  $I$ 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직접생산효과이며,  $A$ 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단위임
  - 이에 따라  $A^2, A^3, \dots$ 는 각각 2차, 3차,  $n$ 차 생산과급효과가 됨
-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증가하는 전체 산업의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음

$$\Delta X = (I - A)^{-1} \Delta Y$$

- 최종수요의 증가가 추가적인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과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수요를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생산유발계수와 유사하게  $j$ 산업의 생산물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s$  고용형태의 노동자 수인 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l_{sj} = \frac{L_{sj}}{X_j}$$

- 고용계수를 적용하면 총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L = l(I - A)^{-1} Y$$

- 이때  $l$ 은 고용형태 종류별( $s$ )\*산업부문별( $n$ )로 구성된 ( $k*n$ )차수의 행렬이며, 그 요소는  $l_{sj}$ 임
  - 위 식을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동에 의한 고용량 변화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Delta L = l(I - A)^{-1} \Delta Y$$

- 투입산출분석의 한계
  - 분석기간 동안 투입계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투입-산출표 작성과 확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효과를 측정하게 되며, 단기효과 예측이 어려움
  - 취업유발계수는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므로 단순히 제도 적용 결과만을 보여주기보다는 제도의 대안이 되는 정책(재정지출이나 기타 제도)을 활용할 때의 효과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제도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